

연구보고 2024-4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연 구 기 관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연 구 진

강영은 변호사 (초록우산)

김희진 변호사 (김희진 법률사무소)

엄선희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사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리는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은 이미 교육, 취미, 여가, 놀이부터 사소한 대화까지 모두 이뤄지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는 기술 발달의 편의성과 확장성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내재된 위험과 이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해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노출, 스마트폰 과의존, 도박이나 마약 문제로 이어지는 신종·변종 유해 매체물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와 실질적 변화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은 가정과 학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 관련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까지 의무감을 갖고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해외에서는 단순히 콘텐츠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삭제, 차단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방대한 온라인상의 유해정보와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들과 국가기관에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더욱 폭넓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연구보고서에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 원칙을 확인하고, 해외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국내법의 한계를 짚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세이프티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 이번 연구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갈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온라인 세이프티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법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법 개정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며, 온라인 공간에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들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번 연구에 참여해 주신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님, 김희진법률사무소 김희진 변호사님, 공익법단체 두루 엄선희 변호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새얀 변호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담긴 결과와 제언을 바탕으로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라는 화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전 사회적 공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초록우산 회장
황영기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3
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접촉 실태	4
3) 신·변종 유해매체물의 위험	6
4)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우려	6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7
나.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10
가.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10
나. 해외 입법례 조사 및 연구	10
다. 국내법 현황 분석 및 개정안 제안	10
3. 연구의 방법	11

II.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15
가. 일반논평 제25호 채택의 배경과 구조	15
나. 일반논평 제25호의 주요 내용	17
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점검 요소	17
2)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	18
3)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적 이행조치	18
4) 아동의 정보접근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20
5)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 폭력의 위험성	21

6) 아동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가정환경의 책무	21
7) 아동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이용	21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아동권리	22
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22
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23

Ⅲ. 해외 입법례의 동향 및 검토

1. 개요	27
2.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 (Online Safety Act 2021)	28
가. 법 제정의 의미	28
나. 법률의 주요 내용	29
1) 유해 자료의 규제	29
2)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32
3) 감독당국의 권한	37
다. 한계 및 비판	40
3.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2023」 (Online Safety Act 2023)	42
가. 입법 취지 등	42
나. 규제 내용	43
1) 적용 대상	43
2) 규제 콘텐츠	44
가) 불법콘텐츠	45
나) 유해콘텐츠	45
다. 주요 내용	47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47
2) 감독당국의 권한	52
3) 위반 시 제재	53
라. 한계 및 비판	53
1)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53
2) 규제의 공백 또는 일관된 집행의 어려움	53

4.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 (Kids Online Safety Act)	55
가. 입법 취지 등	55
나. 영국 OSA 2023 및 호주 OSA 2021과의 차이점	57
다. 규제 대상	58
1) 적용 대상	58
2) 규제 대상 위험(harm)	58
라. 주요 내용	60
1) 사업자의 의무	60
가) 주의의무(제102조)	60
나) 아동 보호의무(제103조)	61
(1) 안전 장치(safeguards) 제공 의무	61
(2) 자녀 보호 도구(parental tools) 제공 의무	63
(3) 위험 신고 접수 채널 제공 의무	63
(4) 불법 약물 광고 금지 의무	64
2) 감독당국의 권한 및 위반 시 제재	64
마. 한계 및 비판	64
5.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66
가. 입법 취지 등	66
나. 규제내용 등	66
1) 주요 변경사항	66
가) 영토적 범위의 확장	67
나) 다수의 규제사항이 수탁처리자(processor)에도 적용	67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도입	67
라)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6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	68
6.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72
가. 공통적 시사점	72
1) 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72
2)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73
3) 규제 콘텐츠 또는 위험의 확대	74
4) 독립 법률의 제정	74
5) 컨트롤타워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규제 구조	75
6)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75

나. 개별 입법례의 시사점	77
1) 호주의 OSA 2021	77
2) 영국의 OSA 2023	77
3) 미국의 KOSA	78
4) 유럽연합의 GDPR	79

IV. 국내법의 현황 분석 및 입법적 제언

1. 개요	8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4
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84
1) 관련 문제점	84
2) 현행법의 한계	84
3) 개정안	84
나. 해외사업자의 아동 이용자 보호 책무 강화	86
1) 관련 문제점	86
2) 현행법의 한계	87
3) 개정안	88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88
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강화	88
다) 국내대리인의 수행 업무	88
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90
1) 관련 문제점	90
2) 현행법의 한계	91
3) 개정안	92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94
1) 관련 문제점	94
2) 현행법의 한계	95
3) 개정안	95
마.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책무 강화	96
1) 관련 문제점	96
2) 현행법의 한계	97
3) 개정안	97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99
1) 관련 문제점	99

2) 현행법의 한계	100
3) 개정안	101
사.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보호	102
1) 관련 문제점	102
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격권 보호론	102
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후구제의 중요성	104
다) 분쟁조정 절차의 의미	104
2) 현행법의 한계	105
가) 관련 법리	105
나) 법률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필요성	105
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삭제·차단 기한 구체화	105
라)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의 활용 필요성	106
3) 개정안	106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해야 하는 권리를 ‘인격권’으로 명시	106
나) 침해 행위에 ‘전송’을 추가	108
다)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처리기한 구체화	109
라) 국가의 신고 및 삭제 지원	109
마) 분쟁조정 절차의 확장	110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의무 강화	115
1) 관련 문제점	115
2) 현행법의 한계	116
3) 개정안	116
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의무	116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의무 도입	117
자.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120
1) 관련 문제점	120
2) 현행법의 한계	121
3) 개정안	122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협평가 의무	124
1) 관련 문제점	124
2) 현행법의 한계	124
3) 개정안	124
카. 가상정보의 표시의무	127
1) 관련 문제점	127
2) 현행법의 한계	128

3) 개정안	128
타. 투명성 보고서의 실효성 확보	129
1) 관련 문제점	129
2) 현행법의 한계	130
3) 개정안	130
파. 위반 시 제재	131
3. 개인정보 보호법	133
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133
1) 관련 문제점	133
2) 현행법의 한계	133
3) 개정안	134
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요건 강화	134
1) 관련 문제점	134
2) 현행법의 한계	135
3) 개정안	135
다.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구체화	136
1) 관련 문제점	136
2) 현행법의 한계	137
3) 개정안	138
가) 국가의 신고 및 삭제 지원	138
나) 법정대리인 동의 방안 개선	138
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개선	138
라. 아동의 열람 등 요구 권리 보장	140
1) 관련 문제점	140
2) 현행법의 한계	140
3) 개정안	141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2
가.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142
1) 관련 문제점	142
2) 현행법의 한계	142
3) 개정안	143
나. 아동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과 처리 고지의 의무	144
1) 관련 문제점	144

2) 현행법의 한계	144
3) 개정안	145
다. 정보 주체인 아동의 지위 확인 및 의사 존중을 위한 절차 마련	146
1) 관련 문제점	146
2) 현행법의 한계	146
3) 개정안	147

V. 결론	149
--------------------	-----

참고문헌	157
-------------------	-----

부록	16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	169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188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196

표 목차

〈표 1〉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24
〈표 2〉 OSA 2021 유해자료의 규제	30
〈표 3〉 OSA 2021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33
〈표 4〉 OSA 2021 온라인 안전국의 권한	37
〈표 5〉 OSA 2023 불법 콘텐츠의 내용	45
〈표 6〉 OSA 2023 아동 유해 콘텐츠의 내용	46
〈표 7〉 OSA 2023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	49
〈표 8〉 KOSA에서 규정하는 ‘위험’	59
〈표 9〉 KOSA에서 규정하는 ‘설계적 특성’	60
〈표 10〉 KOSA에서 규정하는 ‘안전 장치’	62
〈표 11〉 KOSA에서 규정하는 ‘자녀 보호 도구’	63
〈표 12〉 GDPR 제8조 아동의 동의 요건	69
〈표 13〉 GDPR 제83조 과징금	69
〈표 14〉 GDPR recital 제38항	70
〈표 15〉 GDPR 제12조 투명성 원칙	70
〈표 16〉 GDPR 제17조 잊혀질 권리	71
〈표 17〉 GDPR 제40조 행위지침	71
〈표 18〉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안	85
〈표 19〉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정안	89
〈표 20〉 정보통신망법 제41조 개정안	92
〈표 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3조의2 신설안	94
〈표 22〉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개정안	95
〈표 23〉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개정안	98
〈표 24〉 정보통신망법 제43조의2 개정안	102
〈표 2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 결정	108

〈표 2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삭제요청 처리기한에 대한 신설안	109
〈표 27〉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 개정안 ...	110
〈표 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제44조의9 개정안	118
〈표 2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개정안	123
〈표 3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신설안	125
〈표 31〉 정보통신망법 제4조 개정안, 제44조의13 신설안	128
〈표 32〉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개정안	130
〈표 33〉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제재안	131
〈표 34〉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개정안	134
〈표 3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정안	136
〈표 36〉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개정안	139
〈표 37〉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개정안	141
〈표 38〉 위치정보 보호법 제3조 개정안	143
〈표 39〉 위치정보 보호법 제12조 개정안, 제17조의2 신설안	145
〈표 40〉 위치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3조 개정안	1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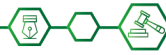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3~9세 이용자는 89.4%, 10대 이용자는 99.5%),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인터넷 접속이 99.8%(와이파이 이용, 5G 스마트폰 이용, 3G/LTE 스마트폰 이용 등)로 나타났다.¹⁾ 다양한 정보 검색, 상품 구매·판매, 금융거래와 미디어 이용, 동영상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 환경이 일상의 보편적인 배경이 된 만큼, 아동·청소년이 새롭게 형성된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피해 사례로서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펴보면,²⁾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인데(2017년 14.6세)이고, 대다수 피해자가 여자 아동·청소년이면서 이 중의 25.4%가 13세일 정도로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고, 이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이며,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2024).

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2024).



지털 성범죄 피해 문제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진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19년 19.1%에 비해 2022년 52.9%로 높아졌고,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2022년 기준 14건으로 2019년의 1건 대비 증가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가 아동의 의존적 특성과 취약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 주며, 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태를 방증한다.

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접촉 실태³⁾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조사 결과⁴⁾ 중 매체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률이 96.7%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3%)’, ‘TV 방송(87.6%)’,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74.9%)’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청소년이 인터넷/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개인방송, 동영상,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85.7%, 84.1%로, 청소년의 놀이·여가 및 문화생활이 디지털 환경과 밀접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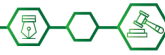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반면에,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청소년관람불가’, ‘19세 이상 시청 가’로 표시된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7.5%로, ’20년 대비 10.1%p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016년 18.6% → 2018년 19.6% → 2020년

3)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2).

4) 2022년부터는 종전의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33.8% → 2022년 40.0%). 청소년의 31.2%는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과 같은 OTT서비스)로 성인용(19금) 영상물을 본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25.2%),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3%)를 통해서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험을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보다 ‘TV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메타버스’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 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SNS’가 4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34.0%)’, ‘인터넷/모바일 메신저(31.6%)’, ‘TV방송(25.8%)’ 순이었고, 청소년의 55.9%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간행물을 볼 수 있다 답하여, 아동·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유해매체 이용은 개인정보 피해 경험으로 이어졌다.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간행물 이용자 중 인터넷(SNS, 게임, 메신저 등)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는 각각 9.3%, 11.1%로 전체 평균(6.8%)보다 높았고, 신·변종매체 중에서는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26.0%)’, ‘돈 또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16.2%)’, ‘에스크랩(12.6%)’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알려준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해매체에 접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줘, 다양화된 매체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매체이용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60~70%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긴 했지만(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교육 73.2%,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69.8%,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64.1%,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63.7%), 개인정보 보호나 성범죄 예방 외에 온라인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의 다양한 맥락을 반영하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3) 신·변종 유해매체물의 위험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신·변종 유해매체물도 계속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⁵⁾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변종 유해매체물은 ‘중고거래 앱 또는 사이트(28.6%)’였으며, ‘19세 이상(19금)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19.2%)’, ‘에스크앱(18.5%)’, ‘19세 이상(19금) 이용 인터넷 게임(12.7%)’ 순이었다. 신·변종 유해매체물에서도 나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는데,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이 41.5%로 가장 많았고, ‘도박성 게임(40.5%)’, ‘19세 이상(19금) 이용 음반, 음원,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파일(22.2%)’, ‘19세 이상(19금) 이용 인터넷게임(19.0%)’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특히 앞서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듯, 채팅앱 등을 통한 만남은 청소년 성범죄와 폭력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 이용자,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자, 신·변종 매체 이용자들의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 미팅, 랜덤채팅, 소개팅용 채팅앱, 돈 또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 19세 이상(19금) 이용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경험률이 높고, 가출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간행물, 신·변종 매체 등 유해매체를 경험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온라인 도박,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이용 경험이 꾸준히 보고되는 등 디지털을 매개한 피해 사례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그만큼 권리 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우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⁶⁾에 따르면, 인터넷 과

5)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2).

6)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024).

참고로 2024년부터 기존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가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로 조사명이 변경되었다.

의존 위험군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⁷⁾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 1,249,317명 중 221,029명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17.7%에 달했다. 조사 동향을 보았을 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수치는 전년 대비 9,605명으로 소폭이나마 꾸준히 감소하였으나[2022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5%(23만5678명), 2023년은 18%(23만634명)], 이 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자가 진단”으로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 많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의존적인 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인 만 3~9세 아동은 25.0%에 달했고, 10대 청소년은 40.1%로 나타났다.⁸⁾ 이 결과는 20대 이상 성인과 비교하여 그 결과치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중학생이 37,418명으로 가장 많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여자 중학생이 26,533명으로 가장 많았던 결과에서도, 남자 아동의 경우 온라인 게임, 여자 아동의 경우 SNS 활용도를 유추할 수 있다. 과몰입 또는 중독 문제에서 파생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폭력과 범죄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접근을 짚어내야 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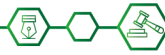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중독, 과의존 실태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적절한 접근권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여기서 아동의 접근권은 단순히 ‘이용’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안전한 이용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비차별적인 접근, 연령에 적합하면서 자율성에 기반한 이용은 꾸준한 훈련과 주변의 지지 체계를 요하는바, 단순히 가정과 학교의 책임에 둘 영역이라 할 수 없다. 전반적인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사회와 기업, 국가의 책임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우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7) 과의존 위험군 인원은 위험사용자군(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어 전문기관 도움이 필요한 수준)과 주의사용자군(사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분류된 인원수를 합친 결과이다.

8) 통계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



이라 한다)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책무를 부담한다. 가장 최근의 심의였던 2019년의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온라인상의 아동권리 침해 우려와 개선 조치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⁹⁾ 온라인을 매개한 아동 성착취 문제에 주목하면서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⁰⁾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지침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학교 안팎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사회적인 책무를 읽을 수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가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보고된다”는 점도 짚어, 아동매매에 대응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도 주문하였다.¹¹⁾

2019년의 최종견해에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권고사항들은 대체로 아동에 대한 폭력과 범죄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는 아동권리의 광범위한 범주에서 역사적(제3·4차 최종견해 이행) 맥락과 당대적 맥락(2017~2019년 보고 기간)을 반영하여 집중된 의제라 할 수 있다. 가장 크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의식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사회적 관심이 미약했고, 그만큼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 간,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점차 심화되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아쉽게도 앞서 언급한 성범죄 실태와 유해환경 접촉 실태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디지털 환경은 일상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에 따른 신종 범죄, 중독 문제, 개인정보 노출과 침해 사례는 더 다양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누적

9) CRC/C/KOR/CO/5-6, para. 27(b).

10) CRC/C/KOR/CO/5-6, para. 28(a),(b).

11) CRC/C/KOR/CO/5-6, para. 45.

되고 중첩된 문제들을 ‘아동권리접근법(Child Rights Approach)’¹²⁾으로 살피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현황과 한계를 아동권리에 기반해 점검하고, 그 결과로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안전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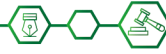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1)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권리의 원칙을 확인하고, 2)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3) 국내법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아동권리 증진의 필수적 과제로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4. 12.은 제7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었던 때로,¹³⁾ 차기 국가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법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짚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 결과는 일반논평 제25호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의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을 드러내고, 국내에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이행조치를 효과적으로 제안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2) 아동권리접근법이란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아동권리의 국제기준과 원칙을 반영하면서, 권리주체자인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 실현을 촉진하는 접근법이다(UNICEF, 2014). 아동권리협약 제5조가 명시하였듯, 모든 아동은 자신의 발달하는 역량에 맞게 보호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 접근법”에서 “아동권리 접근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CRC, 2011). 이처럼 의무이행자가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식하는 것에 방점을 둔 아동권리접근법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경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탐색하는 논의에 실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13) 참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2023. 9. 30.까지 기존의 보고 절차(Traditional reporting procedure)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앞으로 협약 이행의 기본적인 보고 절차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로 전환된다고 결정하였고(위원회의 Decision No. 18 참조), 우리나라는 선택적 배제(opt out)를 선언하지 않았으므로써 2024. 1. 1.부터 약식보고절차에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정된 보고서 제출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2024년 10월 기준), 8년을 주기로 하는 약식보고절차를 고려할 때, 2025. 12. 무렵에는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도출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기한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내용

가.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아동권리에 대한 준거로서 아동권리협약과 그 해설서로 기능하는 일반논평 중 제 25조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와 함께 발간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의 세부 내용을 훑어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있어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국가와 기업, 사회의 책무를 명료히 한다.

나. 해외 입법례 조사 및 연구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해외 입법례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선진적으로 도입한 EU의 사례, 가장 최근의 입법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호주와 영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호주와 영국, 미국의 사례는 법 제·개정에 이르는 치열한 논의자료를 자세히 탐색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법 개정 방향에서도 핵심적인 사항과 주의가 필요한 내용, 구체적인 절차와 구조의 설계에 깊이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다. 국내법 현황 분석 및 개정안 제안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토대로, 국내법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보호에 미비한 측면을 짚고,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 온라인상의 또는 온라인을 매개한 괴롭힘과 폭력, 성범죄,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와 같은 구체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디지털 환경에 관련된 국내의 다수 법령들 중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주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하였던 만큼, 시대적 변화 속에 달라진 사회적 의제와 그에 따른 현안들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잘 정리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 발간물, 보도자료나 정책문건, 판례 및 결정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는 “온라인 안전, 개인정보보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착취, 사이버 안전, 유해 콘텐츠, 불법 정보,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키워드로 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최근의 국제적 입법 동향을 참고하고자, 해외의 입법례와 그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주되게 검토하였다. 아동 온라인 안전에 있어 법·제도 개선을 선진적으로 추진한 해외의 입법례는 기본권 충돌 맥락의 쟁점 사항[예를 들어,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및 영업(직업)의 자유 등]과 함께 제·개정된 법 시행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고, 국내에서 실효적인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해 주었다.

II.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아동권리

II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기준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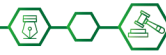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가. 일반논평 제25호 채택의 배경과 구조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모든 이들의 삶에 중요한 축이 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예상되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확인되면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확장되었다.

주목할 만한 가장 공식적인 논의는 2014. 9. 12.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와 아동권리(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를 주제로 제21차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s)을 개최하였고, 이는 일반논평 제25호를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전에도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대개 성적 착취 및 학대 문제였던 반면, 일반토론의 날은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는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측면까지 폭넓게 다루며 이를 강조했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등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혜택을 막지 아니하면서 위험과 가능한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온라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리 기반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반토론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듯,¹⁴⁾ 이 논의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집중하는 관점이 결코 아동을 수동적 대상에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⁵⁾

14) UN CRC, 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2014), para. 2.

15) 참고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디지털 세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s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고(A/HRC/RES/34/7),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당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A/HRC/39/29)하는 등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의 담론은 삶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분명히 확장되었다. 가장 최근의 인권이사회 제56차 회기(2024.06.18. ~ 2024.07.12.)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Safety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국가와 시민사회, 기업의 책무 이행을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아동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경로로 활용될 필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토론의 날 이후로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맥락에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를 다루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켰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제25호 작성을 위한 개요(concept note)를 발표하면서 2019. 3.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국제기구 등에서 총 136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그와 함께 28개 국가에서 709명 아동·청소년과 협의도 진행하였다. 일반논평 제25호의 초안(draft)은 이처럼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다시금 2020. 8.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한 결과 총 142개 의견서가 모였다. 이에 따라 2021. 2.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고 2021. 3.에 공표되었다. 당시에 위원회는 일반 규격의 유엔 문서를 발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용어집, 해설서, 아동 친화 버전도 동시에 배포하면서, 일반논평이 채택된 배경과 필요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바 있다.¹⁶⁾

일반논평 제25호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더불어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evolving capacity)을 본문에 앞서 다루어, 아동권리의 해석에 있어 아동의 다양한 연령과 발달적 특성, 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강조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클러스터를 반영하여 일반이행조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아동, 건강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¹⁷⁾가 디지털 환경의 맥락에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할지 해설하고

16) 당시 제출된 의견서 목록(Inputs received)과 아동친화버전(child-friendly version) 및 용어집(terminology glossary), 해설서(explanatory note)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홈페이지의 “General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항목에 게시된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United nations.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general-comment-no-25-2021-childrens-rights-relation>)

17) 2015년 개정된 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침(CRC/C/58/Rev.3)에 따라 기존의 클러스터는 총 9개(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조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 5.경 위원회는 클러스터를 11개(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보건, 생활수준, 아동권리와 환경,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로 재구성할 것임을 밝혔다(국제 NGO child rights connect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법제의 한계와 해외 법제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및 참여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이하에서는 일반논평의 포괄적인 내용 중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나. 일반논평 제25호의 주요 내용

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점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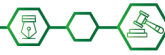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비차별(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제6조), 아동 참여와 견해 존중(제12조)의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장에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첫째, 국가는 모든 아동¹⁸⁾이 그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보 필터링이나 프로파일링 또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절차에 아동의 정보가 불평등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아동은 연령상의 특성상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고,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국적이나 민족, 이주배경과 같은 아동의 취약성은 더 큰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은 애초에 아동에 주목하여 설계되지 않았던 만큼, 아동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아동 최상의 이익은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노력으로, 아동의 현재성에 주목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아동의 모든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권리 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the Child NEW - Dialogue Structure” 참조). 구체적으로, 아동의 정의는 일반이행조치의 입법적 조치에서 다루고, 장애아동, 보건과 복지(생활수준)를 별도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며, 아동권리와 환경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른 정기보고서 지침 개정안이 2024년 10월 현재까지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96차 회기(2024. 5. 6. ~ 5. 24.)부터 당사국에 대한 최종권해를 11개 클러스터에 기초해 작성되고 있으며, 조만간 지침 개정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18)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 또는 국적, 언어 또는 기타 다른 배경, 그리고 소수 민족 아동 및 선주민 아동, 망명 신청 아동, 난민 및 이주 아동, 성 소수 아동[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intersex)], 임신매매 또는 성 착취 피해 아동, 대안양육 아동,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및 기타 취약 아동 등(CRC/C/GC/25, para. 11).



셋째,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각종 경험과 기회는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서 파생되는 각종 위험¹⁹⁾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디지털 기기가 생애 초기에 부모 및 보호자와 맺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위협하거나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한다. 아동의 적절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양육자와 교육자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뒷받침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환경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아동의 보고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참여권 실현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참여의 기회 제공에서 나아가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률,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개발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도 점차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도한 모니터링 또는 정보수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2)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역량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무이행자의 역할은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유의미하다. 디지털 환경은 아동이 부모와 양육자의 감독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고, 주체성을 실천하는 만큼 각종 위험에 접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자신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부모와 양육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되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달하는 역량 개념은 아동만의 과제가 아니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꺼이 자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적 이행조치

국가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검토, 도입 및 개선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제도적 틀에 아동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영향평가의 의무화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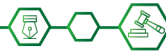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19) 콘텐츠, 접촉, 행위, 계약, 그중에서도 특히 폭력 및 성적 콘텐츠, 사이버공격 및 괴롭힘, 도박, 성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착취 및 학대, 자살 유인 또는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자로 지정된 무장단체를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된 위험 등(CRC/C/GC/25, para. 14).

국가가 아동권리 정책에 디지털 환경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동보호 정책에 온라인 속 아동보호를 포함하는 의식적인 노력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의 전반에 관계된 만큼, 아동권리에 미치는 광범위한 결과를 아울러 정책적 판단과 조정을 끌어낼 수 있는 기구, 협력체계도 구성되어야 한다. 합당한 자원의 확보, 예산의 할당은 아동권리의 온전한 실현과 디지털 포용 향상에 필수적이다. 자료수집과 연구는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이때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중과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관련 정보를 확산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과 부모 및 양육자 대상 교육은 물론 일반 대중과 정책 입안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사결정 전반에 아동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 부분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도 요청된다. 기업은 아동권리 보장(침해 예방, 보호 및 구제)에 대한 독자적인 책무가 있으며, 국가는 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기업이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고 수준의 윤리, 프라이버시 및 안전을 준수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업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일반이행조치에서 다룬다. 국가는 아동을 표적으로 하거나 아동이 접할 수 있는 광고와 마케팅을 규제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연령의 아동이 “연계성(association)이나 친화도 프로파일링(affinity profiling)의 표적이 되는 것”과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기반 관행, 감성 분석, 몰입형 광고, 그리고 가상 및 증강 현실 환경에서의 제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홍보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쉰는다.

적절한 구제책의 접근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아동과 이들의 대리인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사법적·비사법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밀이 보장되는 아동 친



화적인 신고(진정) 경로, 공익 소송이나 집단 민원 제도, 무상의 법률 조력, 나아가 피해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적절한 보상에는 사과, 정정, 불법 콘텐츠 제거, 심리적 회복 서비스 이용 또는 기타 조치 등에 따른 원상복구, 배상 및 만족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상은 아동의 취약성과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예상되는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범국가적 특성을 가지며, 글로벌 사업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안도 있는 만큼,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4) 아동의 정보접근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할 고유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양한 형식의 활용, 소수 아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동화된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이 상업적 또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유료 콘텐츠를 우선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뉴스 미디어와 관련 기관이 아동의 디지털 위험과 기회를 보고하는 지침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라이버시는 아동의 주체성, 존엄성 및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 등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업, 기타 조직의 정보 수집 및 처리, 혹은 신원 도용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될 수 있다. 아동의 온라인 활동 외에 부모가 아동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타인이 아동의 정부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동료나 타인에 의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보안내재화(privacy-by-design) 도입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국가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의미있게 동의하였단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수정하고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보유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 폭력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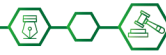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은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가상공간에서 지내도록 촉발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는 가장 대표적인 폭력의 형태이며, 그밖에 명예훼손과 괴롭힘, 사이버 폭력과 유인, 강요를 통해 스스로 생산한 콘텐츠와 같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메시지 또는 사진 제작이나 공유, 자살행위 및 섭식장애와 같이 자해 행동을 부추기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는 아동의 발달 역량을 고려해 안전 및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예방적·보호적 조치 외에 회복적 사법 방식을 취해야 한다.

6) 아동의 디지털 접근을 위한 가정환경의 책무

아동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양육자의 기술적 이해, 역량 및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정은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양육자는 가장 밀접한 관계자로서 아동의 디지털 이용을 지켜보면서 효과적인 도움이나 제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류화된 수단이 법정대리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지와 동의권, 이의제기권 부여라는 점도 양육자의 이해도와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국가는 부모와 양육자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아동권리를 지원하는지 배우고,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 부모와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지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부모가 금지 또는 통제보다 상호 공감 및 존중을 기반으로 아동보호와 커지는 아동의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7) 아동의 보전과 복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이용

디지털 기술은 청소년기 정신 건강을 비롯한 기초보전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아동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디지털 환경을 규제하는 논의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중독 우려가 큰 온라인 게임 또는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규제가 아동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계적 방법과 절차적 접근성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자료나 서비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오늘날 주요한 과제이다.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과 아동권리

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하 ‘이행 원칙’이라 한다)은 국가와 기업이 기업의 활동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를 예방, 해결 및 구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련의 지침이다.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적 경제활동의 증가, 급격히 성장한 민간기업의 활동과 함께 1990년대 주요 글로벌 문제가 되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년에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위임 권한을 확립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임무 수행자(mandate holder)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행 원칙은 위 특별대표의 최종 보고서로서, 2011. 6.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서 채택되었다.

특별대표는 이행 원칙이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기준과 절차의 의미를 국가와 기업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단일한 문서에 통합하며, 현 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규범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 밝혔다.²⁰⁾ 다양한 국가와 초국적기업과 지사, 수많은 국내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행 원칙은 하나의 방식으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²¹⁾ 이행 원칙을 나침반 삼아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인권 이행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 A/HRC/17/31, para. 14.

21) A/HRC/17/31, para. 15.

국내의 경우,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자율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인권 의식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역할은 전향적이지 못하고, 초국적 해외 기업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과 대응도 미약하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영리 추구라 하더라도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의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아동권리의 고려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행 원칙은 법·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쟁점, 그 지향점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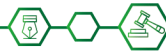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이행 원칙의 채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및 기타 사회적 행위자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업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기업경영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다만, 이행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인권 이행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책무를 안내하지만 아동권리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특수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행 원칙 전반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구절은 하나 있는데, 국가가 기업에 제공해야 할 인권 존중 방법에 대한 지침은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 등 적합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 등 소수집단·소외계층이 직면할 특정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²²⁾ 이에 기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엔글로벌 콤팩트와 유니세프가 2012년 발표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아동권리접근법을 이해하는 시각에 도움이 된다.²³⁾ 기업의 경영전략에 아동권리를 반영하는 핵심적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커진 국내·외 기업의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방향성 탐색도 조력할 수 있다.²⁴⁾

22) A/HRC/17/31, annex. para. 3.

23)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기초한 것이며, 국제노동기구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82호)과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38호)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및 유엔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과 같은 기준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24) 경영 계획과 전략에 아동권리를 통합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위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와 직원의 동기 부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고도 밝힌다.



이러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기본적 책무의 약속(선언 발표, 인권 실사, 아동에게 민감한 절차 수립 등), 모든 기업 활동에서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기업의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개발·시행 포함), 아동권리를 고려한 마케팅과 광고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온라인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기업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기업이 온라인을 매개해 운영되는 현실에서, 10가지 원칙들은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책무와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탐색하는 논의에 길잡이를 제공한다. 10가지 경영원칙은 이하의 <표 1>과 같다.

<표 1> 10가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1. 기업은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
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4.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한다.
7. 환경과 토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8. 안전보장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9.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Ⅲ. 해외 입법례의 동향 및 검토

1. 개요
2.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 (Online Safety Act 2021)
3.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2023」 (Online Safety Act 2023)
4.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
(Kids Online Safety Act)
5.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6.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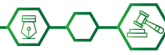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해외 입법례의 동향 및 검토

1. 개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환경 규제, 그중에서도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단발적인 문제 제기(청소년 유해매체물, 성착취 범죄 등)는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 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일관된 법적 틀을 갖추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분절적으로 정의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오히려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 범죄 규율의 의미를 흐리고 있다는 문제가 거듭 지적되어 왔다.

반면에, 최근 호주와 영국에서는 차례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법체계를 갖추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절차적 보완, 규제·감독 기구의 권한 강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도 연방법과 개별 주법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일찍이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정보주체인 아동·청소년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경계를 제공한다. 해외의 선행 입법례와 관련된 논의자료들은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시의적절한 함의를 줄 수 있다.



2.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 (Online Safety Act 2021)²⁵⁾

가. 법 제정의 의미

2021. 7. 23. 제정되고 2022. 1. 23.부터 시행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이하 ‘OSA 2021’이라 한다)은 기존에 있던 「온라인 안전 강화법 2015」(Enhancing Online Safety 2015) 및 관계 법령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호주인²⁶⁾의 온라인 안전 개선 및 온라인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위험 요인과 유해 요소도 빠르게 진화하였고, 그에 대처하는 수단이나 절차가 변화할 필요성을 반영한 법안이었다.

법 제정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²⁷⁾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보호 주체로 명시하여, 모든 호주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사이버 학대(cyber abuse)’,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규정하였다.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물론 온라인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적 책무를 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인의 보호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전 사회적인 인식증진을 촉진할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²⁸⁾ 또는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²⁹⁾

25)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 원문은 호주 정부의 연방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https://www.legislation.gov.au/C2021A00076/latest/text>), 번역자료는 국회도서관 번역문을 활용하되, 법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반영한 조문도 있다.

26) 이때의 “호주인”은 호주 국민에 한하지 않는다. 법 제5조에 따라, “호주 성인”이란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성인을 말하며, “호주 아동”이란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아동을 말한다.

27) 김여라, 호주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중재 Wn.163 (2022), 89.; 김상원·최경미,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법적 연구—EU·호주·영국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3권 제1호 (2024), 228.

28) “관련 전자 서비스(relevant electronic service)”란 최종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다른 최종 사용자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최종 사용자가 다른 최종 사용자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단문 메신저 서비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채팅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가 다른 최종 사용자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13(A)조).

29)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제19조에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개인이 대중에게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를 제안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1항), 주무장관은 명시된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명시된 자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법령으로 선언할 수 있다(2항).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³⁰⁾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를 넓히고, 이들의 모니터링과 삭제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영리적·비영리적 목적의 대다수 기업·사업체 운영이 디지털에 기반하거나 디지털을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으로, 호주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안전 설계를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면서 의무 이행을 조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¹⁾

셋째,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권한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통해 온라인 안전에 관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온라인 안전국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과 관련된 모든 온라인 문제를 다루며,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영연방 정부부처, 당국 및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제4조, 제25조). 온라인 안전국에서 다루는 불법정보와 유해한 자료 범위도 ‘사이버 폭력’, ‘성인 사이버 학대’,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되지 않은 공유’ 등을 폭넓게 망라하며, 그 유형과 예시를 각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나. 법률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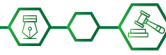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1) 유해 자료의 규제

호주는 특히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였고, 이 중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파급력도 훨씬 빠르며, 온라인 유포 시 2차·3차 가해로 이어지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반면, 가해자의 익명성 문제로 제재가 어려운 문제를 이유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³²⁾

30) 제5조에서 “호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hosting service provider)”란 호주 내 자료 호스팅과 관련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31) 채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63.

32) 김여라, 호주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중재 Wn.163 (2022), 89-90.



이에 따라 호주는 OSA 2021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 외에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자료(제6조), 성인 대상의 사이버 학대(제7조),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제9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 OSA 2021 유해자료의 규제

제6조(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1) 이 법의 목적상, 자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d)호와 제(e)호에 해당한다.

(a)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된다:

- (i) 소셜미디어 서비스
- (ii) 관련 전자 서비스
- (iii) 지정 인터넷 서비스

(b) 합리적인 일반인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i) 그 자료가 호주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ii) (경우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입법규칙에 규정된다.

(d) 그 자료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이다.

(e) 호주는 그 자료의 대상이다.

(2) 제(1)항에 규정된 결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 (a) 호주 아동이 접속을 하거나 호주 아동에게 전달된 자료의 직접적 결과
- (b) 1명 이상의 다른 자가 접속을 하거나 이와 같이 전달된 자료의 간접적 결과

(3)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적용된다.

(4)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그 자료를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a) 특정인이 다음에 해당한다.

- (i) 호주 아동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다.
- (ii)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또는 지정 인터넷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이다.

(b)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한다.

(c) 자료의 게시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이다.

제7조(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1) 이 법의 목적상, 자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e)호와 제(f)호에 해당한다.

(a)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된다:

- (i) 소셜미디어 서비스
- (ii) 관련 전자 서비스
- (iii) 지정 인터넷 서비스

(b) 합리적인 일반인이 그 자료에 특정 호주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c) 호주 성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그 자료가 모든 상황에서 위협적이거나 괴롭게 하거나 불쾌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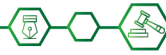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
- (d) (경우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입법규칙에 규정된다.
 - (e) 그 자료는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이다.
 - (f) 호주 성인은 그 자료의 대상이다.
 - (2) 제(1)항에 규정된 결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 (a) 호주 성인이 접속을 하거나 호주 성인에게 전달된 자료의 직접적 결과
 - (b) 1명 이상의 다른 자가 접속을 하거나 이와 같이 전달된 자료의 간접적 결과
-

제9조(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1) 이 법의 목적상,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기록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자료를 말한다.

- (a) 청각자료
 - (b) 시각자료
 - (c) 시청각자료
 -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료의 변경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

법 제6조에 따라 아동 대상 사이버 폭력 자료란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로서(a),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그 자료가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의미한다(b). 또한, 법 제7조가 정하는 성인 대상 사이버 학대 자료란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로서(a),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그 자료가 특정 호주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호주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위협적이거나 괴롭게 하거나 불쾌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b).

조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동 대상 사이버 폭력 자료와 성인 대상 사이버 학대 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의 정도”에 차등을 둔 부분이다. 아동 대상 유해한 자료는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성인 대상 유해한 자료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심각한 피해(serious harmful)”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건강의 심각한 피해(심리학적 피해, 고통을 포함하며, 다만, 단순한 고통, 슬픔, 공포나 화와 같은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데(제5조), 호주 정부는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동성애 혐오, 성전환 혐오,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등의 심한 혐오



표현(hate speech)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³³⁾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더 민감하게 고려하려는 입법 취지를 엿볼 수 있다.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1종 자료와 2종 자료도 구분하는데, 1종 자료란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 거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출판물·컴퓨터 게임 및 기타 자료이고(제106조), 2종 자료는 등급분류위원회가 상영 불가·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 1급 및 2급 성인 출판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및 기타 자료이다(제107조). 2종 자료의 경우, 아동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가 요청된다(제46조).

한편으로, 사이버 자료가 호주 성인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사이버 학대 자료에 해당하는데, 불쾌한 것인지의 판단은 제8조에서 정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성인이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의 기준(a), (해당되는 경우) 그 자료의 문학적, 예술적 또는 교육적 가치(b), 의학적, 법률적 또는 학술적 성격인지를 포함한 그 자료의 일반적 성격(c)을 고려해 판단하며, 해당 자료가 사적인 성적 자료일 경우에 그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온라인 환경의 규제 강화는 표현의 자유 규제라는 경계에 맞닿아 있는 만큼, 사회상규와 일반인의 법 감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 온라인 환경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의제가 촉진되는 경로에서 의미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는 그 판단과 규제에 대한 권한을 온라인 안전국에 부여함으로써, 법 적용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상술하였듯 호주의 OSA 2021은 온라인에 관계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대

33) eSafety Commissioner, “Adult cyber abuse”, <https://www.esafety.gov.au/key-topics/adult-cyber-abuse>, (2024. 8. 14. 확인).

표적인 예가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관여하는 정부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한 제4부의 조문이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온라인 안전 요건(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각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규약(code)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온라인 안전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3〉 OSA 2021 온라인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

제45조(온라인 안전 기본요건)

소셜미디어 서비스

- (1) 주무장관은 법령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온라인 안전 기본요건이 결정문에 명시된 요건이라고 정할 수 있다.

관련 전자 서비스

- (2) 주무장관은 법령으로 결정문에 명시된 관련 전자 서비스의 종류에 포함된 각각의 관련 전자 서비스의 온라인 안전 기본요건이 결정문에 명시된 요건이라고 정할 수 있다.

지정 인터넷 서비스

- (3) 주무장관은 법령으로 결정문에 명시된 지정 인터넷 서비스의 온라인 안전 기본요건이 결정문에 명시된 요건이라고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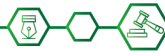
결정으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4) 이 조에 따른 결정으로 법원의 소송으로 집행이 가능한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46조(핵심요건)

- (1) 제45조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 (a)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 사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
- (b) 합리적 조치를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안전국장과 협의할 것이라는 요건
- (c)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자료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
 - (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 (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 (iii) 합의되지 아니한 특정인의 사적인 이미지
 - (iv) 1종 자료
 - (v)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자료
 - (v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 (v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자료
 - (vi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d)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제공된 2종 자료에 대한 아동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나 다른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
- (e)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명하고 즉시 인식이 가능한 제도가 서비스에 구비된다



- 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는 요건
- (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 (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 (iii) 합의되지 아니한 특정인의 사적인 이미지
 - (iv) 1종 자료
 - (v)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자료
 - (v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 (v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자료
 - (vi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f)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분명하고 즉시 인식이 가능한 제도가 서비스에 구비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는 요건
- (g)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특정 기간(6개월 이상)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된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이의 건수를 기재한 내역서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 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
- (h)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특정 기간(6개월 이상)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마다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통지서 이행에 소요된 기간을 기재한 내역서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 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
- (i)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최종 사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에 관한 특정 정보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공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 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
- (2) 제1항은 제45조에 따른 결정에 명시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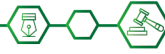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이때의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주체를 망라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자 메시지 서비스·채팅·온라인 게임 등 관련 전자 서비스, 웹사이트와 인터넷 서비스, 검색 엔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 및 공급 업체와 장비 설치 유지 관리자 등도 포함하여, 온라인 서비스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운영할 책무를 명시하였다.

법 제46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온라인 안전의 핵심 요건을 제

시하는데, 최종 사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a),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국장과 협의해 합리적 조치를 판단하며(b), 아동 대상의 사이버 폭력 및 성인에 대한 사이버 학대 자료,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 1종 자료, 혐오 폭력을 장려하고 선동하고 가르치고 묘사하는 자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c),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의 구비 및 시스템 접근성을 보장하며(e), 온라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 등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g, h, i) 것 등이다. 또한, 아동에 대해서는 2종 자료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d), 아동의 온라인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할 의무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호주의 OSA 2021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안전의 핵심 요건을 정하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혹은 온라인 안전국이 인정하는) 기구나 협회가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업계 규약(industry codes)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둔다(제105조). 여기의 온라인 산업 분야란 서비스가 호주 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범위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자 서비스 제공자,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 앱 배포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가 위 각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제조·공급·유지 또는 설치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며(제135조), 온라인 활동에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 관련 전자 서비스 제공,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 앱 배포 서비스 제공, 호스팅 서비스 제공,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제조, 공급, 유지 또는 설치가 포함된다(제134조).

구체적으로, 호주 의회는 온라인 안전국장이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구나 협회가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온라인 산업의 각 분야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규약(업계 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고(제137조 제1항), 제138조는 업계 규약과 산업 표준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의 예시를 열거한다. 일부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제공된 1종 자료나 2종 자료를 다루는 절차(a),



관련 전자 서비스에 제공된 1종 자료나 2종 자료를 다루는 절차(b), 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된 1종 자료나 2종 자료를 다루는 절차(c), 온라인 산업 분야에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는 자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내에서 1종 자료나 2종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자료를 알린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d),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 관련 법적 책임을 통지하기 위한 후속 절차(e), 부모나 책임을 부담하는 성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계정이 아동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f), 고객이 필터링을 거친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g),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가용성, 사용 및 적절한 적용에 관한 정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h), 1종 자료와 2종 자료에 대한 접속 제한을 돕는 기술적 솔루션 이용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i), 1종 자료와 2종 자료에 대한 접속 제한 방법을 최종 사용자에게 조언하는 것(j),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 기술(라벨 표시 기술을 포함한다)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조치(k), 소셜미디어 서비스·관련 전자 서비스·지정 인터넷 서비스 관련 안전 쟁점에 대한 인식 제고(l, m, n), 소셜미디어 서비스·관련 전자 서비스·지정 인터넷 서비스 관련 안전 쟁점을 다루기 위한 후속 절차(o, p, q), 아동이 소셜미디어 서비스·관련 전자 서비스·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에 접속하는 것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책임을 부담하는 성인에게 제공하는 것(r, s, t), 이의제기권의 통지(u), 소셜미디어 서비스·관련 전자 서비스·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된 1종 자료나 2종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루기 위한 후속 절차(v, w, x), 서비스 최종 사용자가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소셜미디어 서비스·관련 전자 서비스·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된 1종 자료나 2종 자료에 대한 신고를 다루기 위한 후속 절차(y, z, za) 등에 대한 내용이다.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고지와 통지 절차,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대한 선택권 보장,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솔루션 제공 외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 인식 제고 역할,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해야 할 내부 규정으로 두도록 하고, 여

기에 온라인 안전국이 협업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동의 참여로 실현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절차적 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조문에 반영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 2021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감독당국의 권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은 호주의 온라인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기구이다. 온라인 안전국의 주요 직무는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증진이며, 이를 위해 온라인상의 유해 자료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콘텐츠 운영 계획 등을 관리한다(제4조,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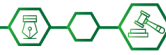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온라인 안전국장의 직무는 제27조에서 정한다. 온라인 안전국장은 OSA 2021과 호주의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업무 조정,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 교육과 인식 제고, 재정지원, 연구 수행 등이 포함되어,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은 온라인 안전을 위한 통합적인 창구라 표현할 수도 있다.³⁴⁾ 온라인 안전국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해 필요하거나 적합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제28조), 호주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동권리협약을 적절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제24조).

〈표 4〉 OSA 2021 온라인 안전국의 권한

제27조(온라인 안전국장의 직무) (1) 온라인 안전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부여되는 임무
 - (i) 이 법
 - (ii) 호주의 다른 법률
- (b)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활성화
- (c)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는 조치의 실행에 대한 지원과 장려
- (d)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부처, 당국 및 기관의 활동 조정
- (e)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및 보급
- (f)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 사업의 지원, 장려, 수행 인증 및 평가

34) 김상원·최경미,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법적 연구-EU·호주·영국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미국 헌법연구 제3권 제1호 (2024), 229.



- (g) 국가를 대리하여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재정지원의 지급
 - (h)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지원, 장려, 수행 및 평가
 - (i)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으로)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보고서와 논문의 공표
 - (j) 주무장관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보고서 제출
 - (k) 주무장관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하여 조언
 - (l)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하여 다른 자, 단체 및 정부와 협의 및 협조
 - (m)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원
 - (n) 이 법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 (o) 이 법의 준수 장려
 - (p) 다음과 같은 지침이나 성명서의 성문화
 - (i)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관여하는 자와 기관을 위한 모범실무를 추천한다.
 - (ii)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또는 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를 포함한 사건의 시기적절한 해결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 (q) 제(p)호에 따라 성문화된 지침과 성명서의 홍보
 - (r) (경우에 따라) 입법규칙에 명시된 다른 직무
 - (s) 상기 직무 수행에 부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일의 수행
- 보조금
- (2) 제(1)항(g)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재정지원이 승인될 수 있다.
 - (a) 주
 - (b) 준주
 - (c) 주나 준주 이외의 자
 - (3) 제1항(g)에 따라 재정지원이 승인되는 조건은 국가와 보조금 수령인 사이의 협약서에 규정된다.
 - (4) 온라인 안전국장은 국가를 대리하여 제(3)항의 협약을 체결한다.
지침과 성명서는 법령이 아니다.
 - (5) 제(1)항(p)에 따라 성문화된 지침과 성명서는 법령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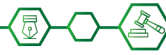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특히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은 불법정보와 유해한 온라인 자료의 규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우선 온라인 안전국장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48시간 이내(또는 온라인 안전국장이 허용한 이보다 긴 기간 이내)에 삭제되지 않았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안전국장에게 그 자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온라인 안전국장이 그 자료가 과거 또는 현재에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제65조, 제66조).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65조나

제66조에 따라 교부된 삭제통지서의 요건을 이행해야 하고(제67조), 온라인 안전국장은 제67조를 위반하는 자에게 공식 경고를 할 수 있다(제68조).

이러한 규제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최종 사용자가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를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 인터넷 서비스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가 온라인 안전국장에게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자료의 삭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에 삭제할 것(e), 어떠한 경우이든 아동이 대상인 사이버 폭력 자료의 게시를 자제할 것(f), 최종 사용자가 자료 게시에 대하여 아동(또는 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에 그 성인)에게 통지서에 규정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과할 것(g)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제70조). 최종 사용자도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에서 통지서의 요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제71조), 온라인 안전국장은 제71조를 위반하는 자에게 공식 경고를 할 수 있다(제72조). 호주 아동에 대한 사이버 폭력 자료 외에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되지 아니한 공유(제6부),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제7부)도 온라인 안전국장이 삭제통지서 교부 대상이다.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는 차단요청과 차단통지의 대상이 된다(제8부). 온라인 안전국이 교부하는 차단요청서와 차단통지서의 경우,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선동·가르치거나 묘사하는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의 차단, URL의 차단, IP 주소의 차단 조치가 예로 제시되며[제95조 (2)항, 제99조 (2)항], 자료의 본질, 그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의 수, 온라인 안전국장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안 등을 고려하여 공동체에 미칠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제95조 (4)항, 제99조 (4)항].

온라인 안전국은 행정상 규제 외에 법적 규제에 대한 신청권도 행사한다. 온라인 안전국장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전자 서비스 제공자, 지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직전 12개월간 안전국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과 관련된 벌금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2건 이상이고, 그 위반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동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



시키는 명령을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156조~제158조).

이 같은 규정들은 온라인 안전국의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절차에 따라 적법성과 필요성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사안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OSA 2021 제104조는 법 집행이나 이행감시 및 위반 조사, 법원이나 재판소의 절차·과학·의학·학술 또는 역사 연구 수행이나 지원, 전문 언론인에 의한 공익 뉴스 보도나 시사보도, 공무원의 공무나 직무 수행, 예술작품을 선의로 구성·공연·전시·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는 삭제통 지나 차단통지에서 예외라고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도 도모하였다.

다. 한계 및 비판

OSA 2021은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규제 콘텐츠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DITRDCA)의 2024. 4. 19. 자 이슈페이퍼³⁵⁾에 의하면,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³⁶⁾ 온라인 혐오³⁷⁾, pile-on attacks³⁸⁾, 자살·자해 또는 섭식장애 유발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추천 알고리즘·종단간 암호화와 같은 신종기술에 따른 위협 등 상당수의 콘텐츠 내지

35) DITRDCA는 이슈페이퍼를 통하여 OSA 2021의 내용 및 추진 현황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DITRDCA, Issue Paper: Statutory Review of the Online Safety Act 2021, (2024)]. 위 이슈페이퍼에는 OSA 2021의 현행 규정만으로 규율되지 아니하는 신종위험들로 무엇이 있는지도 기술되어 있다.

36) 수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가 누드, 반누드 또는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온라인 행동을 의미한다. 한편 영국 OSA 2023은 사이버플래싱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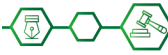
37) 유럽인권재판소는 2015.경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혐오 발언은 (중략)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전파될 수 있으며, 때로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이용 가능한 상태로 잔존한다(hate speech...can be disseminated like never before, worldwide, in a matter of seconds, and sometimes remain persistently available online).” (출처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lfi AS v Estonia App. no. 64569/09 ECHR, 2015. 6. 15., [110])

38) pile-on attack이란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공유, 댓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링크 또는 태깅된 것을 의미한다. 개별 행위 자체로는 OSA 2021의 사이버폭력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으나 위 pile-on attack의 누적, 확산으로 인하여 위법적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콘텐츠이다.

위험 요소가 OSA 2021의 규율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호주 정부가 OSA 2021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혐오 및 신상털기(doxxing)와 같은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법과의 중복 규제 및 정부 부처별 관할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위 이슈들은 OSA 2021이 온라인 안전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제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OSA 2021보다는 다른 법률의 제·개정으로 다루어질 소지가 높다.³⁹⁾

39) 가령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폭력에 대한 위협 및 선동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주는 비방 금지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쳤다. [출처 : Baker Mckenzie, "Australia: Review of the Online Safety Act and related reforms on online harms", (2024).]



3.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2023」 (Online Safety Act 2023)

가. 입법 취지 등

2023. 10. 26. 제정 및 공표된 「온라인 안전법 2023」(이하 ‘OSA 2023’이라 한다)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② 감독당국의 권한·책임 등을 강화한 법률이다. OSA 2023의 특징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으로서 다양한 작위의무(불법·유해콘텐츠 안전의무, 위험평가의무, 불만처리절차 마련의무 등)를 부여한 점이다.

OSA 2023의 방대한 규정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약 6년이 소요된 OSA 2023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간략히 그 경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2017년 몰리 러셀(Molly Russell)이라는 14세 아동의 자살로 온라인 안전과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다고 알려진다.⁴⁰⁾ 러셀이 사망하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자해, 자살에 관한 키워드로 대량의 관련 콘텐츠를 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⁴¹⁾ 이를 계기로 영국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유해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소셜미디어의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7. 10.경 “인터넷 안전 전략 그린페이퍼(Internet Safety Strategy Green Paper)”⁴²⁾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9. 4.경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발간하여 새로운 규제 모델과 사업자의 의무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 강화론을 공론화하였다.

영국 정부는 2021. 5. 위 자료들을 토대로 한 온라인 안전법(안)을 발의하였다.

40) “10대 소녀 자살에 ... 인스타그램, 가해 관련 사진 퇴출”, 아주경제 (2019. 2. 8.).

41) 몰리의 아버지인 이안 러셀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사가 자신의 딸을 비롯한 아동 이용자들에게 ‘알고리즘적으로 자살, 자해를 무제한 권장(freely algorithmically recommended suicide, self-harm)’하였다고 비판하였다.

42) 그린 페이퍼는 최종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든 초안 성격의 정책 문서이다.

산업계에서는 위 발의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업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켜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다며 거세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영국 국회의 상·하원은 정부 발의안에 대한 양원 합동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 12.경 위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오히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법안의 전면 개편을 권고하였다.⁴³⁾ 위 검토위원회 의장인 데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의 아래 발언은 그 당시의 사회적 컨센서스와 OSA 2023의 기본적인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⁴⁴⁾

“For too long, big tech has gotten away with being the land of the lawless.... the era of self-regulation for big tech has come to an end.”

(빅테크 기업은 너무 오랫동안 무법 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율규제 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안전법(안)이 심의되던 중 2022. 11. 16.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이라 한다)가 제정·공표되었다. DSA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온라인 안전법(안)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표준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시정조치와 같은 중간 단계 없이 즉각 금전적 제재 및 처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불법·유해콘텐츠의 온라인 게시 관련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끝에 지금의 OSA 2023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⁴⁵⁾

나. 규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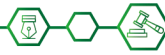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1) 적용 대상

OSA 2023의 주요 적용 대상은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providers of user-to-user services)’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자(providers of search services)’

43) House of Lords and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Online Safety Bill, Report-Draft Online Safety Bill, (2021).

44) “Online Safety Bill: New offences and tighter rules”, BBC (2021. 12. 14.).

45) OSA 2023의 시행을 위한 행정지침을 소관부처인 OFCOM이 마련하는 중에 있어 법의 전면 시행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서 영국 내 상당수의 이용자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영국 이용자가 서비스의 표적 시장(target market)인 서비스이다.⁴⁶⁾

이용자 간 서비스란, 이용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 또는 공유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⁴⁷⁾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게임,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버 등이 해당된다.

검색 서비스란, 검색 엔진 그 자체 또는 검색 엔진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를 뜻한다.⁴⁸⁾ 검색 서비스 또한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선별 및 제시하는 일정한 알고리즘을 동원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OSA 2023에서 적용대상을 폭넓게 정의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OFCOM은 2023. 10. 기준으로 약 10만 개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고 추산하였다.⁴⁹⁾

2) 규제 콘텐츠

OSA 2023은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와 유해콘텐츠(legal but harmful content)를 규제한다.

46) 다만, 뉴스 웹사이트, 일부 소매 사이트, 사내 이메일 등은 적용 제외된다.

47) OSA 2023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user-to-user service의 개념은 “an internet service by means of which content that is generated directly on the service by a user of the service, or uploaded to or shared on the service by a user of the service, may be encountered by another user, or other users, of the service.”를 의미한다.

위 정의 규정에서 “encounter”는 ‘콘텐츠의 열람, 시청 또는 그 밖의 경험(read, view, hear or otherwise experience content)’을 의미하고, “content”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주고 받는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 시각자료, 음향 및 그 밖의 묘사(anything communicated by means of an internet service,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including written material or messages, oral communications, photographs, videos, visual images, music and data of any descrip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제236조 제1항 제b호).

48) OSA 2023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search service의 개념은 “an internet service that is, or includes, a search engine.”을 의미한다.

49) OFCOM, Ofcom’s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Online Safety Act, (2023).

가) 불법콘텐츠

불법콘텐츠란 테러 조장, 아동성착취·성학대 등의 **관련 범죄(relevant offence)**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말한다(제59조). 콘텐츠를 구성하는 단어, 이미지, 말이나 소리의 ‘사용’이 관련 범죄이거나, 콘텐츠의 ‘소지, 시청, 접근, 게시 또는 유포’가 관련 범죄인 경우, 그 콘텐츠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관련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OSA 2023은 관련 범죄를 **우선 범죄**와 **기타 범죄**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OSA 2023 불법 콘텐츠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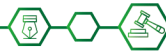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관련 범죄	구 분	내 용
	우선 범죄 (priority offence)	○ 테러 범죄(부칙5), 아동 성착취·성학대(부칙6), 그 밖의 범죄(부칙7) - ‘그 밖의 범죄’에는 자살 조력, 살해 협박, 스토킹, 증오 범죄, 폭력 선동, 불법 이민·밀입국, 불법 약물 공급, 무기 매매, 인신매매, 사기 등이 포함됨 ○ 우선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콘텐츠인 경우 ‘우선 불법콘텐츠(priority illegal content)’라고 지칭함
	기타 범죄 [an offence within §59(5)]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안전·품질 관련 위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나) 유해콘텐츠

유해콘텐츠는 적법하지만 아동(18세 미만으로 정의⁵⁰⁾) 및 성인에게 유해한 콘텐츠로, **아동 유해콘텐츠**와 **성인 유해콘텐츠**로 구분된다(제60조 이하).⁵¹⁾ 아동 유해콘텐츠는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뉜다.

50) OSA 2023 제236조 제1항.

51)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아동 유해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표 6〉 OSA 2023 아동 유해 콘텐츠의 내용

아동 유해 콘텐츠	구 분	내 용
	주요 우선 유해콘텐츠 (primary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 음란물(pornographic content) ○ 자살, 자해, 섭식장애나 섭식장애 관련 행동을 장려, 조장하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콘텐츠 ○ 그 자체로 음란물은 아니나, 식별적(identifying) 콘텐츠, GIF, 이모티콘, 기호 등과 결합된 텍스트 콘텐츠
	우선 유해콘텐츠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성정체성 관련 특성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 ○ 특정한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장애인, 성정체성을 재정립한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 사람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를 장려, 조장 또는 지침을 제공하는 콘텐츠 ○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 위협, 굴욕, 비하 목적의 내용을 포함함 ○ 심각한 폭력 또는 상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콘텐츠 - 가상의 사람, 동물, 가상의 생명체에 대한 묘사도 포함함 ○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하도록 장려, 조장하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콘텐츠 ○ 신체적 유해 물질 또는 유해할 수 있는 용량의 물질을 섭취, 주입, 흡입하도록 권하는 내용
	비지정 유해콘텐츠 (non-designated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 영국 아동의 상당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영국에서는 유해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내용규제 방식에 대하여 거의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거나 내용규제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 결국 법률보다 섬세한 하위규정의 마련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주요 우선 유해콘텐츠’와 ‘우선 유해콘텐츠’의 대부분 사항은 수범자가 예측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미 유튜브

(Youtube)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실천하는 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되기도 한다. 다만, ‘섭식장애 관련 행동’, ‘장려, 조장, 지침 제공’, ‘신체에 유해할 수 있는 용량’, ‘비지정 유해콘텐츠’와 같은 요건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적·객관적 판단 근거의 마련 또는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 등 보완을 통하여 소관부처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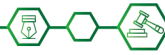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OSA 2023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 산업계의 자율규제가 상당히 중시되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서비스 상의 불법·유해정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정보 생산자의 책임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행정처분을 통하여 관리할 사항일 뿐이었다. 사업자들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OSA 2023은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등에게 **이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자를 엄단한다. 주의의무는 ① 안전의무, ② 위험평가의무, ③ 이용자 신고·민원 처리 절차 제공의무 등으로 규정된다. 이에 더하여 해당 서비스가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일 경우 아동이용자에 관한 안전의무 및 위험평가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안전의무는 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설계 및 운영함에 있어 불법·유해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② 불법·유해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불법·유해콘텐츠가 자신



의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불법·유해콘텐츠의 존재를 신고하기 전에 위와 같은 콘텐츠가 처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발견한 불법콘텐츠는 삭제하고, 아동 유해콘텐츠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려고 할 때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생성 시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⁵²⁾을 거쳐야 하며, 어떠한 인증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의무**로서 해당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 상태가 아동 및 성인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콘텐츠의 종류 및 이용자의 연령대 등 상세 기준에 따라 각 평가하고, 그 위험도의 완화·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평가 결과는 OFCOM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대중에 공개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콘텐츠 신고 기능, 이용자 불만사항의 접수·처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불만 접수·처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여야 하며, OFCOM의 지침(OFCOM appproved complaints code of practice for customer service and complaints handling)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 아동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친화적인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OSA 2023는 정부의 콘텐츠 심의·삭제 기능을 온라인 플랫폼 등에게 대행시키는 결과를 지양하고,⁵³⁾ 그 대신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 안전 보장을 위한 서비스 설계, 위험도의 사전 평가, 불만 접수·처리 기

52) 2023.말 영국 정부는 성인 디지털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령 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OFCOM은 모든 성인 사이트에 AI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의 연령을 더 정교하게 검증해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의 연령 인증을 위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업로드하거나 사이트 내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을 사용해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는 기술이 사용됐다. 또 신용카드 조회나 오픈뱅킹 인증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출처 : “英 ‘AI기술 활용해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할 것”, 데일리굿뉴스 (2023.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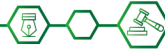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53) 예외적으로 테러 및 아동 성착취·성학대 콘텐츠의 경우에는 OFCOM의 공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내용을 식별하고 삭제·차단하여야 한다.

능 마련 등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광범위한 유통방지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취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는 서비스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력, 아동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비례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개괄하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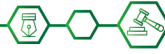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표 7〉 OSA 2023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

구 분	내 용
이용자 간 서비스의 필수 주의의무	[공통] ○ 불법콘텐츠 관련 위험평가의무(제9조) ○ 불법콘텐츠 관련 안전의무(제10조 제2항~제8항) ① 서비스 설계·운영 관련 조치 의무 - 우선 불법콘텐츠 노출 방지 조치 - 위험평가로 식별된 (i) 우선 범죄의 실행·조장에 서비스가 악용될 가능성 완화 및 관리, (ii) 콘텐츠의 위험도 완화 및 관리 ② 서비스 운영에 이하의 시스템 및 절차를 필수 반영 - 우선 불법콘텐츠의 존속 시간 최소화 - 불법콘텐츠 인지 후 신속 삭제 ③ 서비스 약관 관련 명시·설명 의무 - 위 ②에 따른 이행사항을 우선 불법콘텐츠별로 명시하여 이용자가 불법콘텐츠로부터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설명 - 제반 안전의무 준수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설명 - 유형 1 서비스는 약관에 위험평가의 결과도 요약 제시 ○ 이용자 신고 기능 마련의무(제20조), 이용자 불만 접수·처리 절차 제공의무(제21조) - 이용자가 접근 및 사용하기 쉽게 마련해야 함 - 신고 또는 접근차단된 콘텐츠의 게시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함 ○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의무(제22조 제2항, 제3항) - 이용자 보호 조치·정책의 결정, 실행 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할 것 ○ 기록보존 및 점검의무(제23조 제2항~제6항) - 위험평가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 관련 기록을 보조할 의무 -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할 의무
	[아동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⁵⁴)의 추가적 주의의무] ○ 아동 관련 위험평가의무(제11조) ① 제9조의 위험평가와 별도로 추가 실시



	② 서비스 설계·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평가 재 실시 ③ 평가 결과 비지정 아동 유해콘텐츠 발견 시 OFCOM에 보고 ④ 평가 사항 - 연령대별로 (i) 아동 이용자 수, (ii) 아동 유해콘텐츠 노출 위험도 분석(서비스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쉽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위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지도 포함) -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아동 유해콘텐츠의 노출 위험도 - 아동이 피해를 겪게 될 경우, 위 피해에 서비스의 설계(기능 포함)*가 미치는 영향 * 성인이 서비스 내 다른 이용자를 검색 또는 역락할 수 있는지 여부 포함 - 평가 결과 식별된 위험의 증감에 서비스의 설계·운영(수익모델, 지배구조, 예방적 기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분석 등 ○ 아동 관련 안전의무(제12조) - 가장 최근에 수행한 아동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아동 연령대별 위험 완화 및 관리 - 주요 우선 유해콘텐츠 : 전연령 아동에게 노출 차단(연령인증·추정 실시 필수) - 그 외 유해콘텐츠 : 해당 콘텐츠의 노출로 인한 위험이 확인된 연령대 아동에게 노출 차단 - 약관에 (i) 주요 우선 유해콘텐츠 차단 방법, (ii) 우선 유해콘텐츠가 위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대의 아동이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 등을 설명 - 유형 1 서비스는 약관에 아동 위험평가 결과를 요약 제시해야 함
	[대규모 이용자 간 서비스(유형 1)의 추가적 주의의무] ○ 성인 위험평가의무(제14조) ○ 이용자 권한 부여의무(제15조) - 콘텐츠 노출 수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 ○ 민주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 뉴스 발행인,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보호의무(제17조~제19조)
검색 서비스의 필수 주의의무	[공통] ○ 불법콘텐츠 관련 위험평가의무(제26조) - 이용자 간 서비스의 위험평가의무와 유사함 ○ 불법콘텐츠 관련 안전의무(제27조 제2항~제8항) ① 서비스 설계·운영 관련 조치 의무

	- 위험평가로 식별된 위험도를 완화 및 관리 ② 서비스 운영에 이하의 시스템 및 절차를 필수 반영 - 우선 불법콘텐츠 및 서비스제공자가 인지한 불법콘텐츠에 대한 노출 위험 최소화 ③ 서비스 약관 관련 명시·설명 의무 - 이용자 간 서비스의 위험평가의무와 유사함 ○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이용자 신고 기능 마련의무(제31조) ○ 이용자 불만 접수·처리 절차 제공의무(제32조) ○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의무(제33조) ○ 기록보존 및 점검의무(제34조)
	[아동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추가적 주의의무] ○ 아동 관련 위험평가의무(제28조) ① 제26조의 위험평가와 별도로 추가 실시 ② 서비스 설계·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평가 재실시 ③ 평가 사항 - 연령대별 아동 유해콘텐츠 노출 위험도 분석(서비스 내 알고리즘의 위험도, 검색서비스 인덱스 및 검색결과와 분류·제시 방식의 위험도 포함) -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아동 유해콘텐츠가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도 - 아동이 피해를 겪게 될 경우, 위 피해에 서비스 설계(기능 포함)*가 미치는 영향도 * 이용자의 검색 요청 관련 제안 기능 포함 - 평가 결과 식별된 위험의 증감에 서비스의 설계·운영(수익모델, 지배구조, 예방적 기술,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분석 등 ○ 아동 관련 안전의무(제29조) - 가장 최근에 수행한 아동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아동 연령대별 위험 완화 및 관리 - 주요 우선 유해콘텐츠 : 전연령 아동에게 노출 최소화 - 그 외 유해콘텐츠 : 해당 콘텐츠의 노출로 인한 위험이 확인된 연령대 아동에게 노출 최소화 - 공표물에 제반 아동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떻게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명시 - 유형 2A 서비스는 공표물에 아동 위험평가 결과를 요약 제시해야 함



대규모/고위험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의 추가적 주의의무	[공통] ○ 아동 성착취·성학대 콘텐츠 신고(제66조) -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 발견 시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에 신고하여야 함 ○ 서비스 약관(제71조) - 투명성,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성, 표현의 자유 준수 등을 약관의 내용에 포함 ○ 투명성 보고서(제77조) - 이용자 안전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매년 OFCOM에 보고
	[유형 1] ○ 이용자 신원 확인(제64조) - 성인 이용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함 - 신원 확인 이용자에게는 (i) 신원 불명 이용자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또는 (ii) 신원 불명 이용자의 콘텐츠로부터 노출 차단
	[유형 1, 유형 2B] ○ 사기성 광고 관련 주의의무(제38조, 제39조) ① 이용자에게 사기성 광고 노출 방지 ② 서비스 운영에 이하의 시스템 및 절차를 필수 반영 - 사기성 광고의 존속 시간 최소화 - 사기성 광고 인지 후 신속 삭제 또는 차단
포르노콘텐츠 사업자의 주의의무	○ 연령확인 및 아동의 이용 차단(제81조)

2) 감독당국의 권한

OSA 2023의 소관부처는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다. OFCOM은 2003년경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에 근거하여 출범한 방송·통신 관련 단일 규제기관⁵⁵⁾이다.

54) 아동의 접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상세 기준은 제37조 참고.

55) OFCOM은 기존의 기존의 통신위원회(OFTEL),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방송기준위원회(BSC), 무선통신국(RA), 라디오위원회(RAu) 등 방송 및 통신 분야의 5개 독립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OFCOM은 ① 각종 주의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②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위험평가, 불만·접수처리 시스템, 투명성 보고 등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③ 법규 준수 여부의 점검, ④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위법한 콘텐츠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3) 위반 시 제재

주의의무 미이행 등 OSA 2023의 규정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OFCOM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위 요구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고위 경영진이 2년 이하의 자유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영국에서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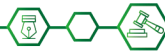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라. 한계 및 비판

1)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OSA 2023의 규정만으로는 ‘주의의무’나 ‘유해콘텐츠’ 등 핵심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 탓에 플랫폼 기업이 삭제나 차단 등 과도한 보호조치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의제기 절차보다도 더욱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규제의 공백 또는 일관된 집행의 어려움

우선, 텔레그램(Telegram), 왓츠앱(WhatsApp) 등과 같이 **종단 간 암호화** (end-to-end encryption) 기술이 적용되는 이용자 간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의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 주고받는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전송자나 수신자가 아니면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없게끔 처리된다. 이 점을 근거로 텔레그램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OSA 2023에 따른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경우 정부로서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기가 매우 곤란하다.⁵⁶⁾

또한 유럽연합의 DSA,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⁵⁷⁾ OSA 2023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콘텐츠에서 배제하여 자율규제로 다루되 허위조작정보 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개입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된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무슬림이나 망명 집단 등에 대한 극우 폭력 시위가 급속히 확산, 반복되자 영국 정부는 OSA 2023의 개정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⁵⁸⁾

56) OSA 2023이 제정되기 이전의 법안에는 종단 간 암호화의 해제 등을 통하여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의 사적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57) 김지현·안성경·조경희·최서지,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26호 통권 제238호 (2023), 1-22.

58) “SNS 가짜 뉴스 선동’ 혼쭐난 영국, 온라인 규제 법 손질 시사”, SBS 뉴스 (2024. 8. 10).

4.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 (Kids Online Safety Act)

가. 입법 취지 등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판례 법리가 확립된 관계로, 온라인 안전 보호 목적의 입법적 시도가 좌초되어 온 역사가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입법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⁵⁹⁾⁶⁰⁾

그런데 최근에는 이례적이게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들이 다수 제정되고 있다.⁶¹⁾ 게다가 연방 차원에서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이하 ‘KOSA’라 한다)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에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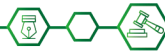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KOSA는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2021. 2.경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KOSA는 1차례 개정을 거쳐 2024. 7. 31.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다.⁶²⁾ KOSA가 향후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1998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59) 미국에서는 아동이 온라인상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경 「청소년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위 법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아예 시행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 이후로는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극복하여 시행된 인터넷 콘텐츠 규제 입법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60) 미국에서는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근거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플랫폼에게 광범위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성문법규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나 이는 다소 이례적인 편이다.

61) 이와 같은 입법 추세는 민주당 우세주와 공화당 우세주를 가리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선도적으로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연령적합설계규약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the CAADCA”)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이 2023. 9. 18.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시행 금지 결정(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림에 따라 여타 주법의 제정·시행에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Battle lines drawn as US states take on big tech with online child safety bills”, The Guardian (2024. 4. 15.).]

62) 참고로, 상원은 KOSA와 함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른바 ‘COPPA 2.0’)도 통과시켰다. COPPA 2.0은 미성년자에 대한 타겟 광고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Protection Act) 이후로 수 십 년 만에 이루어진 연방 차원의 온라인상 아동 보호 법이 된다.⁶³⁾ 이러한 시간적 간극에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대중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KOSA가 발의된 배경은 다른 국가와 유사하다. 미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사업모델이 갖는 위험성과 비윤리성이 특히 부각되었다. 상당수의 아동들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성착취, 자살, 마약 거래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이 아동을 수익원으로만 인식한 채 오히려 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아동의 이용시간·빈도·범위·활동의 유지, 증대를 조장하는 기술을 설계·운영하여 왔다는 점(가령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 제공⁶⁴⁾)이 각종 문건을 통하여 확인 및 공론화되었다. 나아가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일상의 전반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 앞에 아동과 가정의 자체적·개별적 대처가 얼마나 무력한지가 드러났고,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 노력이 아동들이 처한 위험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⁶⁵⁾

63) 다만 KOSA가 공화당이 주도 중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및 관련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가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일부 하원 의원들은 KOSA의 적용 대상을 일부 초대형 기업으로 더 한정시키자는 견해도 표명하고 있어 KOSA가 수정되어 통과될 여지도 있다. [출처 : “Child Online Safety Bill Scales Senate Hurdle, but Fate Remains Uncertain”, The New York Times (2024. 7. 25.).]

64) 가령 틱톡이 출시한 ‘틱톡 라이트’ 서비스는 친구 초대, 출석 체크, 틱톡의 추천 영상 시청에 대하여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참고로 2024. 8.경 틱톡은 DSA에 따른 유럽연합 측의 압박에 따라 틱톡 라이트 서비스의 유럽 내 영구 중단을 결정하였다[출처 : “틱톡, EU 압박에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영구 중단”, 포춘코리아 (2024. 8. 6.).].

한편 우리나라에는 틱톡 라이트 서비스가 출시되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단지 방통위가 2024. 7. 19.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주하면서 연구 대상에 틱톡 라이트의 서비스도 포함시켰을 뿐이며 그 밖의 규제 동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65) 위 공론화 과정을 촉발한 몇 가지 사건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① 2021. 9.경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Facebook)에 재직하였던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의 폭로를 통하여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를 통하여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오히려 어린이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② 그 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3. 1.경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을 위하여 빅테크 기업의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연방 보건복지부도 2023. 3.경 소셜미디어가 미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면서 담배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를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등에 미치는 유해성을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Surgeon General Issues New Advisory About Effects Social Media Use Has on Youth Mental Healt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 3. 23.) 등 참조].

나. 영국 OSA 2023 및 호주 OSA 2021과의 차이점

영국 OSA 2023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호스팅된 불법·유해콘텐츠를 식별하여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할 조치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호주 OSA 2021도 이용자의 신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KOSA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에 부과한다. 따라서 KOSA에는 콘텐츠 삭제 등 조치의무가 아예 없고 다만 콘텐츠 노출 알고리즘과 같이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실시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콘텐츠 선택권 등 안전장치가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는지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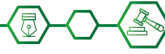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이처럼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 방식을 달리하는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 내용규제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기 때문인 듯 하다.⁶⁶⁾ KOSA를 공동 발의한 리차드 블루멘탈 의원도 KOSA는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규제할 뿐 콘텐츠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엑스(X), 스냅(Snap)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③ 2023. 12. 28.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엑스·유튜브 등 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2022년에 18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약 110억 달러(약 14조2,000억 원)의 광고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되었다. 연구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광고 수익을 위하여 아동 이용자의 보호를 계속 유예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인스타그램 등 SNS, 美 청소년 대상 연 110억 달러 광고 수입”, 연합뉴스 (2023. 12. 28.).]

④ KOSA가 상원에서 심의되던 중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보호에 매우 미진하였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일례로 미국 10대가 애용하는 스냅챗(Snapchat)과 디스코드(Discord)가 2023. 3. 경 연방상원 법사위원회(US Senate 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위 두 소셜미디어의 18세 미만 사용자 중 불과 1% 미만의 아동이 부모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엑스(X, 舊 트위터)는 부모 관리 도구가 전혀 없고, 틱톡(TikTok)과 메타(Meta)는 연방상원에 자세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 관리 도구는 그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솔루션 중 하나였다. [“Fewer than 1% of parents use social media tools to monitor their children's accounts, tech companies say”, NBC News (2024. 3. 30.).]

66) 일례로, 미국 성소수자(LGBTQ+) 관련 단체는 KOSA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KOSA가 2024. 2. 수정되어 서비스의 디자인에 대한 규제로 한정되자 종전의 반대입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KOSA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하였다. 반면 아동 이용자 비중이 상당한 메타(Meta), 틱톡(TikTok)은 KOSA가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규제 대상

1) 적용 대상

KOSA는 17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 게임,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된다(제101조 제3항 제A호). KOSA는 위와 같은 서비스들을 ‘관련 플랫폼(covered platform)’이라고 통칭한다.

한편 KOSA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로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화상·음성 회의서비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터넷 뉴스, 비영리기관·학교 등 교육기관·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서비스가 소셜미디어나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KOSA의 적용을 받는다(제101조 제3항 제B호).

2) 규제 대상 위험(harm)

호주, 영국과는 달리 KOSA는 규제할 ‘콘텐츠’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 대신 관련 플랫폼이 아동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완화해야 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관련 플랫폼은 이러한 특정 위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위험은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이다. 리차드 블루멘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예시가 아닌 **한정적 열거**이므로⁶⁷⁾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67) “The duty of care only applies to a fixed and clearly established set of harms, and sets a high standard for what online platforms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is specific list of harms includes medically-recognized mental health disorders (suicidal behaviors, eating disorders,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ddictive use, illicit drugs, and federally-def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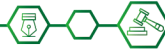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FTC)는 관련 플랫폼의 주의의무에 관한 집행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험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표 8〉 KOSA에서 규정하는 ‘위험’

번역문	원 문
▪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 건강 장애로서,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약물 사용 장애, 자살 행위	▪ Consistent with evidence-informed medic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ntal health disorders: anxiety, depression, eating disorders, substance use disorders, and suicidal behaviors.
▪ 중독성 사용	▪ Patterns of use that indicate or encourage addiction-like behaviors by minors.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온라인불링, 괴롭힘	▪ Physical violence, online bullying, and harassment of the minor.
▪ 불법 약물(마약, 담배, 주류, 도박) 관련 홍보 및 마케팅	▪ Promotion and marketing of narcotic drugs(as defined in section 102 of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02)), tobacco products, gambling, or alcohol.
▪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	▪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minors.
▪ 약탈적, 불공정, 또는 기망적 마케팅 관행 또는 그 밖의 금전적 피해	▪ Predatory, unfair, or deceptive marketing practices, or other financial harms.

child sexual exploitation crimes. The FTC – which has the power to enforce the duty of care – cannot add or change the harms covered under the bill.”

[출처 : RICHARD BLUMENTHAL, “What is the Kids Online Safety Act(KOSA)?”, <https://www.blumenthal.senate.gov/about/issues/kids-online-safety-act>, (2024. 9. 10.확인).]



라. 주요 내용

1) 사업자의 의무

관련 플랫폼의 주요 의무는 **주의의무**와 **아동 보호의무**이다. 아동 보호의무는 안전 장치 제공 의무, 자녀 보호 수단 제공 의무, 위험 신고 접수 채널 제공 의무, 불법 약물 광고 금지 의무로 구성된다.

가) 주의의무(제102조)

관련 플랫폼은 아동에 관한 6가지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설계적 특성(design feature)**을 생성 및 구현함에 있어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설계에 의한 위험 예방 여부가 관건이다.

KOSA의 최초 발의안에는 합리적인 ‘조치(measure)’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상원 가결안에는 이 부분이 ‘주의’로 수정되었다. (수정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수정을 통하여 관련 주의의무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설계적 특성’이란 관련 플랫폼의 모든 기능 또는 구성요소로서 아동 이용자의 빈도, 이용 시간, 활동을 조장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서,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KOSA는 이하의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적 특성들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표 9〉 KOSA에서 규정하는 ‘설계적 특성’

-
- 무한 스크롤 또는 자동 재생(infinite scrolling or auto play)
 -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rewards for time spent on the platform)
 - 알림(notifications)
 -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s)
 - 게임 내 구매(in-game purchases)
 - 외모 변경 필터(appearance altering filters)
-

즉, 관련 플랫폼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설계적 특성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 아동 이용자에 대한 위험 발생을 예방, 완화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가령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알림과 넛지(nudge)로 인하여 아동 이용자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강박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금전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는 이러한 넛지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을 미리 고려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이러한 넛지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리차드 블루멘털 의원은 미국 내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하듯이 소셜미디어 기업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관련 플랫폼의 주의의무는 콘텐츠 삭제, 차단 조치와는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므로 통신품위유지법과도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관련 플랫폼에게 삭제 등 조치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KOSA는 아동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검색함에 따라 관련 플랫폼이 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면책 규정도 두고 있다(제102조 제 b항).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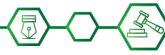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나) 아동 보호의무(제103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보호의무 중 안전 장치 및 선택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KOSA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려 하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1) 안전 장치(safeguards) 제공 의무

관련 플랫폼은 아동에게 정보 보호, 중독성 있는 제품 기능 비활성화, 개인화

68) 가령 아동 이용자가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국가 자살 핫라인이나 약물 남용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찾을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된 알고리즘 추천 거부 등의 ‘안전 장치’를 쉽게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플랫폼은 아동에게 일정한 ‘선택권(option)’을 부여하여야 하고, 안전 장치의 설정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즉, 아동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받고, 주체적으로 이용 환경의 세부 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추천 피드, 스마트폰 알림, 동영상 자동 재생 등 종전의 ‘강제적 기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 장치는 <표 10>과 같이 그 구체적인 기능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플랫폼은 아동에게 ① 계정 삭제, ② 관련 플랫폼에서 수집, 공유된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파기(일명 ‘지우개 버튼’), ③ 관련 플랫폼 이용 시간 제한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이는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된다.

〈표 10〉 KOSA에서 규정하는 ‘안전 장치’

-
- 다른 이용자나 방문자가 아동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
 - 다른 이용자나 방문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수집, 공유되는 아동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
 - 빈도, 이용 시간, 활동을 조정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적 특성, 그밖에 강박적 이용을 야기하는 설계적 특성을 제한하는 기능
 -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할 것
 -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해제
 - 맞춤형 추천 사항의 유형 또는 범주 제한
 - 아동 위치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기능, 위치정보 추적 시 아동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기능
-

(2) 자녀 보호 도구(parental tools) 제공 의무

관련 플랫폼은 자녀 보호 도구를 아동의 부모에게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자녀 보호 도구에는 아래 <표 11>에 정리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1> KOSA에서 규정하는 ‘자녀 보호 도구’

-
- 자녀의 개인정보 및 계정 설정(안전 장치 및 선택권 관련 설정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만 13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설정을 변경할 권한도 추가로 부여
 - 자녀의 구매 및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
 - 자녀의 총 이용시간을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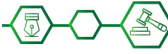
자녀 보호 도구는 자녀의 서비스 이용 환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과의존이나 금융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수단이 부가되어 있을 뿐,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정보와 사생활(검색 기록, 메시지, 친구 목록 등)을 부모에게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대별로 자녀 보호 도구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진다.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보호 도구가 기본값(default)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나, 13세 이상 1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 도구의 활성화 여부가 선택 사항이다. 또한 자녀 보호 도구가 활성화된 경우 관련 플랫폼은 아동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여 아동의 사생활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13세 미만 아동은 관련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3) 위험 신고 접수 채널 제공 의무

KOSA는 부모에게 자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제어할 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KOSA도 관련 플랫폼으로 하여금 부모, 아동, 학교가 아동에 대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응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불법 약물 광고 금지 의무

관련 플랫폼은 아동 이용자에게 불법 약물 관련 광고를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독당국의 권한 및 위반 시 제재

KOSA의 집행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이다. 보충적으로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s general)에게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위반행위에 한하여 민사적 조치(civil action)를 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KOSA는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는 KOSA의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조사, 시정명령, 금전적 제재 등 다양한 규제 권한을 보유한다.

마. 한계 및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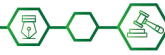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KOSA는 발의 직후부터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KOSA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이 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관련 플랫폼이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노출 방식을 보수적으로 설계할 경우 이용자의 표현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아동이 낙태, 성정체성 등과 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알 권리 또한 제약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연방 정부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콘텐츠 검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KOSA는 아직 연방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불과하다. 과연 이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치열한 로비를 뚫고 공화당 주도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온라인 안전이라는 문제는 의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으므로 하원에

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라질 이슈는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⁶⁹⁾ 하원이 대신 자체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거나, 위헌 우려를 더욱 해소하기 위하여 KOSA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KOSA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주법들이 최근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KOSA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원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69) "What's ahead for Kosa, an online safety act for minors, as it reaches US House?", The Guardian (2024. 8. 3.).



5.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가. 입법 취지 등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이라 한다)은 2018. 5. 25. 시행되었다. 본래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처리’, ‘처리목적의 제한 및 상세화’, ‘최소보관 기간’, ‘처리의 투명성’, ‘데이터 보안’ 등이 핵심 원칙이었다.⁷⁰⁾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실제 내용과 절차적인 면에서 회원국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GDPR이 4년간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쳐 2016. 4. 27. ‘규칙’(regulation)으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되었다.

나. 규제내용 등

1) 주요 변경사항

제정 전과 비교하여 GDPR에서 변화된 주요 사항은 ① 영토적 범위의 확장, ② 강력한 제재, ③ 개인정보 범주 확대, ④ 다수의 규제사항이 수탁처리자에도 적용, 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도입, ⑥ 책임과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하므로, GDPR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70) 최경진, EU GDPR 분석 및 시사점, NAVER Privacy White Paper, 4.

가) 영토적 범위의 확장

GDPR은 유럽연합의 입법 형식 가운데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유럽연합 영역 내의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외지역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라 할지라도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GDPR이 적용된다.⁷¹⁾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장한 이유는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가 구글 또는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 기업 등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나) 다수의 규제사항이 수탁처리자(processor)에도 적용

GDPR은 수탁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탁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고⁷²⁾, 각 회원국이 설치하여야 하는 감독당국의 조사 및 시정권한에는 ‘수탁처리자로부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 등 열람권 취득’, ‘수탁처리자가 규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따를 것을 지시’도 포함⁷³⁾되어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를 수탁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도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감독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고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부당한 지연 없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⁷⁴⁾.

라)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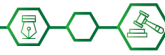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GDPR은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이전권(data portability)권리를 신설⁷⁵⁾하여 보

71) 김현경·이경준, EU의 ‘GDPR 적정성결정을 위한 입법 과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1권 제3호 (2019), 1-37.

72) GDPR Art. 32.

73) GDPR Art. 58.

74) GDPR recital (85)



상을 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비자 그룹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집행하는데 용이하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정보주체의 삭제권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2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처리자의 이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이동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⁷⁶⁾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

아동의 동의를 받는 방식만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GDPR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는 이유는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⁷⁷⁾.

이에 GDPR은 크게 4가지의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에 대하여 두텁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8조에는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어린이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조항을 두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연령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의 존재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은 엄격하지는 않은데, 입증 당시 이용 가능한 기술이 고려되어야 하며 입증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75) GDPR article 20.

76) 다만 2025년부터 전 분야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제35조의2에 의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77) 김효권·박노형·정명현, EU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5.

〈표 12〉 GDPR 제8조 아동의 동의 요건

제8조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어린이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⁷⁸⁾

1.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6조제1항제(a)호가 적용되는 경우, 어린이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어린이가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이다. 해당 어린이가 16세미만인 경우, 그러한 처리는 해당 어린이의 친권자가 동의하거나 허가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이다. 회원국은 이와 관련하여 더 낮은 나이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 13세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경우 정보 관리자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친권자가 동의하거나 허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제1항은 어린이와 관련한 계약의 유효성, 성립, 효과에 관한 규칙 등 회원국의 일반 계약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GDPR은 위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10,000,000유로 이하 또는 사업자의 경우 앞선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 합계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83조).

〈표 13〉 GDPR 제83조 과징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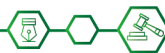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제83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반 조건⁷⁹⁾

4. 다음 규정 위반은 제2항에 따라 10,000,000유로 이하 또는 사업자의 경우 앞선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 합계의 2% 이하(둘 중 더 높은 액수 적용)의 과징금에 처한다.

다만 GDPR 전문(recital) 제38항에서는 친권 보유자의 동의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예방적 또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또는 내밀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동이 직접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78) GDPR article 8. Conditions applicable to child's consent in relation to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79) GDPR Article 83. General condition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표 14〉 GDPR 전문 제38항

recital (38) 어린이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위험, 그 결과와 관련 보호장치 및 권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보호는 특히 마케팅 목적이나 성격 또는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린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방 또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에서는 아동에게 정보처리에 관한 공지를 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한다. 아동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취지, 방식 및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15〉 GDPR 제12조 투명성 원칙

제12조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알림 및 세부원칙⁸⁰⁾

1. 정보 관리자는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언급된 정보와 제15조~제22조 및 제34조에 따른 알림을 정보 주체에게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명확하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해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특정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보 주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이때 정보 주체의 신원은 다른 수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GDPR 제17조는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동의 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위 권리는 정보주체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80) GDPR article 12. Transpar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odaliti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표 16〉 GDPR 제17조 잊혀질 권리

제17조 삭제에 대한 권리(‘잊혀질 권리’)⁸¹⁾

1. 다음 근거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관리자의 지체 없는 삭제를 얻어낼 권리가 있으며, 정보 관리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f) 개인정보가 제8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경우

GDPR 제40조는 행위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당국,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럽위원회의 행동강령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제32조)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행동강령 수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구비한 감시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 행동강령의 수립과 감시기관의 설립이 각 당국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련기관이 준수하고 확보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보호, 친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행위지침 마련 또는 확대를 권고하면서 각국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특별히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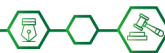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표 17〉 GDPR 제40조 행위지침

제40조 행위지침⁸²⁾

1. 회원국, 감독기관, 보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처리 분야의 특성과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적절한 적용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지침 수립을 장려해야 한다.
2. 정보 관리자나 처리자 범주를 대표하는 협회 및 그 밖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본 규정 적용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행위지침을 마련하거나 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다.
- (g)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정보, 어린이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친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

81) GDPR article 17.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82) GDPR article 40. codes of conduct



6.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

가. 공통적 시사점

1) 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호주, 영국, 미국의 법률(안)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미국은 연령대별로 대별하여 17세 미만을 미성년자(minor)로, 13세 미만을 아동(child)으로 정의한 다음 미성년자보다 아동을 더욱 강하게 보호한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온라인 안전에 관하여 어느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일률적인 해석이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는 ‘아동’이라는 개념은 전혀 쓰이지 않고 단지 ‘청소년’을 개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개념 정의가 없거니와 타법을 인용하는 규정마저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 이러한 문언만 놓고 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마치 연령의 하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법원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 법률 간 관계,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연령 하한은 9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또한 9세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이 부재한다. 앞서 언급한 판결례의 취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관계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도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전적으로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내지는

‘나이가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흔히 십 대 후반의 젊은이(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라고 정의된다. 반면 아동은 ‘나이가 적은 아이.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를 이른다(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서 12~13세까지의 어린 아이(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라고 하여 청소년과 개념을 달리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연령 기준과도 근접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10대 초반부터 20대의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통용되는 말이므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접한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언의 사전적 정의와 사회통념상 개념 또한 법률 요건 해석의 고려사항이 됨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 또는 ‘아동·청소년’과 같이 정정하고 그 연령도 국제규범과의 조화, 입법목적 달성,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함으로써 보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재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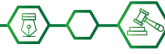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2)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전술하였듯 호주, 영국, 미국의 입법례는 모두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토대로 마련된 사전규제법에 해당한다. 또한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의 DSA,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또한 플랫폼 규제를 통한 유해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사전규제 입법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의 기조는 이와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 국회에서 디지털 환경 내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발의된 사례는 지극히 드물거니와 파편적, 부분적 하위 쟁점만을 다룬 개정안들(가령 소셜미디어 과의존 예방,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의 처벌 강화 등)이 최근 들어 발의되는 추세이다. 정부의 국정기조는 아예 명시적으로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⁸³⁾ 우리나라가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 성범죄물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⁸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자율규제의 한계와 그 원인에 대한 실증적 모색과 아동들이 가

83)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2022), 4.

84) “한국은 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나...‘궁금한이야기Ⅳ’, 딥페이크 성범죄 조망”, SBS 뉴스 (2024. 9. 6.).



상현실에서 처하는 위험 수준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사전규제 입법을 선도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규제 콘텐츠 또는 위험의 확대

호주와 영국은 불법콘텐츠 뿐만 아니라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도 아동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콘텐츠를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제의 차등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규제 대상 콘텐츠를 직접 정의하지는 않으나 아동에 대한 위험을 열거함에 있어 마약, 성착취 등 범죄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불링(online bullying), 섭식장애, 강박적 이용 등과 같이 현행법상 규제 또는 금지되지 않던 유형도 포함시켰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정보’에 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조치의무를 규정하고,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사후규제하고 있다. 그나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유통방지의무를 다루는 부분은 디지털 성폭력물 또는 아동성착취물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입법례처럼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또는 위험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유연한 접근을 꾀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독립 법률의 제정

앞서 살핀 해외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이라는 화두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세부 주제 및 관련 논쟁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다. 이 문제를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은 현행법상 몇 가지 조문만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제25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비단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밖에 디지털 환경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과 참여권 보장,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등 다차원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⁸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는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합해 보이므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컨트롤타워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규제 구조

해외 입법례는 공통적으로 규제기관을 일원화하고 있다. 호주는 eSafety Commissioner, 영국은 OFCOM이 각각 온라인 안전을 총괄하고, 미국 KOSA는 FTC에게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통신 규제에 대한 사항이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다수의 행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게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사이버 폭력과 같이 복합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부처가 뒤늦게 우후죽순으로 개별 대책을 마련하는 난맥상이 거듭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트래픽 유통량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전파 속도 및 범위,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생활에 침투한 비중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규제 체계가 과연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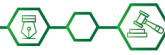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6)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호주, 영국, 미국 모두 기업이 의무 위반 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바, 우리나라의 과징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9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⁸⁶⁾을 비롯하

85) 영국의 OSA 202301 썬막하게나마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함께 둔 것은 단지 아동을 보호 객체로만 인식하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86) 이 사건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지칭한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는 정치 전략 컨설팅 업체로,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 ‘ThisIsYourDigitalLife’를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로부터 위 앱을 이용한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아 이들의 정치성향 분석에 이용하는 등으로 이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2019. 7.경 연방거래위원회에 50억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22. 8.경 손해배상(액수는 비공개)에 합의하였다.



여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를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삭제 명령까지 단행하고 있다.⁸⁷⁾ 또한 2023. 5.에는 아마존(Amazon)의 AI 음성 비서 서비스인 ‘알렉사’가 아동의 음성과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아마존에게 2,500만 달러 상당의 제재와 함께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알고리즘 훈련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⁸⁸⁾ 즉,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단순히 금전적 제재만 강화해서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할 수는 없으므로 아예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이다. KOSA 또한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플랫폼이 아동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장애, 성착취, 온라인불링 등 위험을 야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방법을 비롯한 온라인 안전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 및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만을 둘 뿐, 과징금 등의 적극적 제재는 디지털 성폭력물 또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위반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해외 주요 입법례에서 정량적 과태료 제재가 아니라 수익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 조치를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규제수단도 함께 동원하고 있는 점은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외 입법례 중 영국의 OSA 2023의 제재방식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OSA 2023은 주의의무 불이행 기업 내지는 불법콘텐츠 게시자에 대하여 즉시 제재를 가하는 편이다. 이는 호주와 다소 대조적인데, OSA 2021의 경우 디지털 안전국의 경고(formal warning)와 같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명령 또는 벌금부과명령으로 나아가는 구조이다. 아동 이용자가 단지 피해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뎁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나 사이버불링과 같이 아동이 쉽게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인바, OSA 2023의 일률적인 제재 방식은 위 쟁점에 관하여 다소 섬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87) FTC Final order, In re Cambridge Analytica, LLC, Comm’n File No. 1823107, Dec. 6, 201 등

88) United States v. Amazon.com, 2:23-cv-00811-TL (W.D. Wash. Jul. 19, 2023)

나. 개별 입법례의 시사점

1) 호주의 OSA 2021

OSA 2021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전 사회적인 의제로 인식하며, 아동과 성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관계된 성인의 의식에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온라인 안전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접근법의 실천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OSA 2021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규제 콘텐츠의 개념을 다른 국가의 법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되⁸⁹⁾, 그 대신 기업에게 삭제 등 조치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나아가 규제당국에게 콘텐츠 신고 및 삭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사이버불링 등의 피해자에게 있어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못지않게 해당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및 유통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OSA 2021은 피해자에게 더욱 친화적인 법이라는 분석이 있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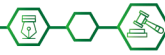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국처럼 서비스 제공자의 각종 주의의무를 법률에 직접적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계로 하여금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개발하도록 한 다음 규제당국이 표준규정의 적절성을 사전 검토하고 사후 준수 여부 및 이행 효과를 감독·제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산업계의 자발적 자율규제가 아닌, 국가의 규제를 통하여 강제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2) 영국의 OSA 2023

다른 국가의 법들에 비하여 OSA 2023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위험평가, 약

89) 물론 형사상 불법 콘텐츠 등 표현의 수위가 OSA 2021보다 높은 콘텐츠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 Act) 등의 규제를 통하여 유통이 금지 내지 제한되어 왔다.

90) 디지털 안전국이 사이버불링 등 자료의 게시자로 하여금 해당 자료의 삭제 또는 게시 금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 아동에게 '사과'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그 사과 의사 표시의 기한과 방식까지도 정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g)호]. 이 또한 OSA 2021의 피해자 친화적 측면으로 보이고, 가해자에게 건전하고도 성숙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불법 유해콘텐츠를 식별하여 신속히 삭제하는 등 이용자 신고 없이도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작위의무를 강하게 부과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OSA 2023 자체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주의의무의 원칙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서비스 제공자가 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지침 등은 아직 마련되는 중이다.⁹¹⁾ OFCOM이 향후 발표할 지침 내지 행위규범이 이 법의 목적 달성에 있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유해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와 같은 콘텐츠의 게시자(이용자)와 중개자(기업)를 모두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을 검열하고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된다.

OSA 2023은 그 제정 배경에서 살피었듯 온라인 안전을 위하여 기업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백과사전과 같이 집대성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온라인 안전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고, 아울러 기업이 준수할 의무도 여러 기준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사전규제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바,⁹²⁾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사전규제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경우 반드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3) 미국의 KOSA

인터넷 통신의 내용규제는 기본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낳는 난제이다. 내용규제 수준에 있어서 호주의 OSA 2021와 영국의 OSA 2023은 입법화되기 이전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편이다. 특히 OSA 2021는 기업들이 법정 기간 이내에 콘텐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OSA 2023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불법·유해콘텐츠의 전송, 유통 여부를 식별

91) 참고로 OFCOM은 아동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등 마련을 위하여 2024. 7. 17.에야 산업계의 의견수렴(consultation)을 마친 상황이다.

92) 예를 들면 ① 위험평가에 있어 일반위험평가뿐만 아니라 아동위험평가 의무를 별도로 마련한 점, ② 주의의무의 이행 수준을 기업의 사회적 영향도, 서비스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한 점, ③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산업의 변화 속도에 따라 법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또는 고위험 서비스의 판단 기준을 법상 일률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한 점, ④ 투명성 공시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서비스가 갖는 구체적 위험도를 알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에 끊임없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KOSA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과 제품·서비스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규제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로서 처하는 위험의 일차적 원인은 정보 전송·유통 행위자에게 있겠지만 근본적 원인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의 사업모델에서 찾아야 하며, 그와 같은 원인의 양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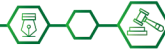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또한 KOSA에 따라 기업이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각종 보호 수단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아동의 선택권과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사생활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입법 개선을 함에 있어 참고 가치가 높다.

4) 유럽연합의 GDPR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2019. 5. 발표한 GDPR 시행 1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GDPR 시행 이후 1년간 유럽연합에서 GDPR 위반으로 접수된 사례는 총 28만여 건이며 이 중 63%가 판결이 완료되고 37%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벨기에 정보보호국(DPA)은 2019년 성명서에서 GDPR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지원과 행정적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2018년 한 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70건의 위반 사례를 제출했다. 2019년 5월 벨기에 법원은 이메일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사용한 시장직 당선자에게 GDPR 위반을 이유로 2,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⁹³⁾

또한 2019. 10. 유럽연합재판소는 온라인 복권 웹사이트 ‘planet 49’에 대한 소비자 단체 소송에서 ‘정보수집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적극적인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019. 7. 구글이 홈 스마트스피커를 통하여 벨기에 플랑드 지역과 네덜란드 사용자들의 음성정보를 수집한 것이 밝혀지면서 구글이 3개월간 유럽연합 내 음성정보 기록을 중단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GDPR 규정

93) “GDPR 시행 1년, 유럽 내 디지털데이터 보호 강화 움직임”, KOTRA해외시장뉴스 (2019. 10. 29.).



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필요에 따라 3개월간 즉시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⁹⁴⁾

이처럼 GDPR 도입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의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수탁처리자 또는 제3자 제공을 받은 자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의무를 가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할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94) GDPR recital (137)

IV. 국내법의 현황 분석 및 입법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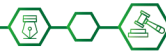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1. 개요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IV 국내법의 현황 분석 및 입법적 제언

1. 개요

국내에는 디지털 환경을 다루는 기본법 또는 통합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차이가 있다. 관련된 국내법에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 조성 and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유·무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 중에서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 보호법의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체제를 경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현행 법제 중 디지털 환경의 가장 광범위한 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동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권리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의무이행자의 책무가 중요한 영역으로, 그 기본적인 조치가 아동권리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안전에 관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가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제5장)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아동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적절성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후자의 개정안을 통하여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에 맞추어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보호’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변인들의 책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1) 관련 문제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통해서도 강조했듯, 아동은 디지털 환경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아동기는 급속한 발달 과정에 있는 시기로서 디지털 환경의 경험이 현재는 물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용자 중에서도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는 추가적이고 민감한 고려가 요구되며, 오늘날 온라인 환경 조성의 주요 과제에 해당한다.

2) 현행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제4호), 아동도 이용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①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7호), ②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제41조),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제42조),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제42조의2), ⑤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제42조의3)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유해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국가의 역할을 일부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관련 조문은 9세 이상의 청소년 연령대에 한정된 내용이고 유해매체물로 표시된 자료에 국한된 규제이며, 나이가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하다. 즉, 법 전반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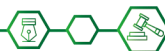
3)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책무가 검

토되는 기초로서 “이용자”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때 이용자는 아동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법」의 미성년자 연령 기준인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였다(안 제2조 제4호, 안 제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전반). 또한, 국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는 더 높은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안전장치가 아동의 권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를 해하지 않는 형태일 필요도 명확히 명시하였다(안 제3조 제2항). 아동보호를 명목으로 아동을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하려는 요청이다.

〈표 18〉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13.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자를 말하며, “이용자” 중에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생략) ② <u>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법정보 및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u>



〈신 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u>청소년</u>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6의2. 삭 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u>청소년</u>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 9. (생 략) ③ (생 략)	③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 및 정보사회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u>아동·청소년</u> -----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7. ----- <u>아동·청소년</u> ----- ----- 7의2. ----- ----- <u>인공지능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u> --- 8.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해외사업자의 아동 이용자 보호 책무 강화

1) 관련 문제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 5. 20. 발표한 ‘세대별 SNS 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 세대를 아울러 이용률 1순위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48.6%)이고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16.7%, 네이버 밴드 13.1%, 카카오톡 10.2%, 트위터 7.7%, 틱톡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전년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플랫폼의 이용률은 감소하였다. 세대별로 보면 Z세대(9세~24세)와 밀레니얼 세대(25~38세)는 인스타그램 선호도가 절반을 넘어 이용 쏠림이 두드러졌다.

즉, 아동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해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바, 이는 다른 기관의 통계⁹⁵⁾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아동의 온라인 안전 보장에 있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얼마나 실효적인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2) 현행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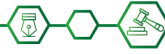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이용자 보호 측면과 법집행 용이 측면이 병존한다. 다만 여기서 이용자 보호 측면의 내용은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 법집행 용이 측면의 내용은 정부기관의 법집행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역할에는 자료 제출 업무만 남게 되었다.

나아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될 수 있다. 이에 여러 해외사업자들이 하나의 국내 법인을 중복 지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업무와 무관한 법인(가령 로펌)을 지정하기도 하며, 심지어 소재가 불명한 유령회사를 지정하기도 하다. 국내 지사가 엄연히 있는 해외사업자(구글, 애플 등)도 제3의 법인을 지정하는 실정⁹⁶⁾이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95) “한국 SNS 사용률 세계 3위… 월 이용자 수 ‘네이버 밴드’ 가장 많아”, 세계일보 (2020. 9. 9.).

96)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51-78.



3) 개정안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기준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다(제32조의5 제1항).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의무가 없다 보니 규제 당국이 매출액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매출액보다는 트래픽 양 등이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더 적합한 변수라는 지적이 있다. 즉, 매출액은 낮으나 트래픽이 많아 국내에 영향력이 큰 엑스(X)와 같은 해외사업자들의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신 일일 평균 트래픽 요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⁹⁷⁾

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요건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법인 또는 지사가 있음에도 유명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내세워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일명 ‘구글 대리인법’으로 불린다)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여전히 국내 주소·영업소만 있다면 국내 지사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의 내용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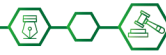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다) 국내대리인의 수행 업무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자료 제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 등을 추가하였다.

97)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51-78.

〈표 19〉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트래픽 양 - ----- -----.
〈신설〉	1.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등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신설〉	2. 제44조의5에 따른 행동강령 제출
〈신설〉	3.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제출
〈신설〉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
〈신설〉	5. 제42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 결과 공개
3. (생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 제1항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1.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둔 경우
〈신설〉	2.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1) 관련 문제점

앞서 언급한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 중 단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인터넷 경험자’는 95.3%를 차지하며, 3~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2년 91.7%, 2023년 89.4%이고,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99.5%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은 유선(70.8%)보다 무선접속방법이 더욱 많이 이용된다고 보고되었는데, 무선인터넷 접속방법은 ‘와이파이 등 특정 범위 내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고(86.1%), ‘5G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61.4%), ‘3G/LTE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43.2%), ‘이동형 무선인터넷 공유기(에그) 등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3.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만 6세 이상 인구의 96.4%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를 보유하고 있고,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99.7%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을 접하고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며,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의 조정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전송되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서 아동·청소년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위험은 더 크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과 규율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시급하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가 보급·확산되면서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게임이나 채팅 등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많아지고 쉬워지고 있으며, 해외의 입법적 결단이 시사하듯이 아동·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접촉 문제는 성인보

다 더 심각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불법정보는 물론 유해정보가 웹사이트나 카페 등과 같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비밀 대화방이나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아동·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크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호기심, 경험과 지식의 제한은 유해정보가 범죄행위(성착취물 보관·전송, 타인의 명예훼손 등)로 이어지고, 부정적 행위나 범죄의 모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도 낳는다.⁹⁸⁾ 따라서 불법정보 외에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이를 위한 기술적·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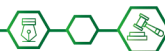
2) 현행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 외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도 정하는데 그 범주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문언 및 해석상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⁹⁹⁾ 그러나 온라인에 전송되거나 유통되는 정보는 그 내용이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아동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위험성에 대한 예방적 요구로 이어진다. 연령이 어릴수록, 고립되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수록,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4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시정요구한 것을 “청소년유해정보”라고 정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제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며, 그 예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8조의2는 아동·청소년

98) 정경오·최경진·황창근,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증진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3-28.

9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2010).



이용자에 초점을 둔 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통 금지를 정하고 있다. 제8조의2는 2024. 7. 19. 개정되며 신설되었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용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이 높아진 현실에 상응하여 심의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함”을 개정이유로 밝힌다. 오히려 법령상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요건보다 규칙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가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가치를 법령의 수준에서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민감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주를 넘어 더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정보에 대한 국가와 기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되,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다(안 제41조 제1항).

〈표 20〉 정보통신망법 제41조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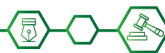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청소년</u>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음란·폭력정보,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자료,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청소년유해매체물</u>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u>아동·청소년유해정보</u>”라 한다)로부터 <u>아동·청소년</u>-----. 1. (현행과 같음) 2. <u>아동·청소년</u> -----

3. <u>청소년</u>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u>아동·청소년</u> -----
4. 그 밖에 <u>청소년</u>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 <u>아동·청소년</u>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u>청소년</u>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 ----- <u>아동·청소년</u> ----- -----.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 위임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특히 “유해물질(시행령안 제23조의2제 제4호 나목)”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고, 최근 마약류 범죄와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는¹⁰⁰⁾ 반면 현행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로 규제하는 형태로는 신속한 예방 및 해외사업 규제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마약 간접 체험물을 유포하는 등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것도¹⁰¹⁾ 문언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제23조의2를 신설하는 시행령안은 이하 <표 21>과 같이 제안한다.

100)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를 때, 2023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5%(1,477명)이지만, 2012년 38명, 2017년 119명, 2022년 481명(2.6%)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01) “유튜브 등 인터넷에 마약류를 투약한 이후의 신체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영상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은 특히 1020세대에게 마약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자가 유튜브에 ‘마약 체험’을 검색한 결과 5건 이상의 마약류 간접 체험 영상이 게시돼 있었다. 이들 동영상은 시청자에게 화면을 직시하게 할 것을 요구한 다음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투약했을 때 보이는 시야를 간접 체험하게 해주면서 LSD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른 영상에선 1인칭 시점에서 시야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출처 : “유튜브에 퍼진 ‘마약류 체험’ 영상…청소년 마약사범 양산 부추길 위험 [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2024. 8. 18.).]



〈표 2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3조의2 신설안

시행령 신설 규정(안)

제23조의2(아동·청소년유해정보) 법 제4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특정 신체부위 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 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 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의 정보
 - 다.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 라.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3.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정보
 - 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
 - 다.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사상, 가족의 형태 및 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차별, 따돌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4.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자살, 자학행위, 섭식장애,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이하 ‘자살 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조장하는 정보
 - 나.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간접적 사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여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1) 관련 문제점

제Ⅲ.항에서 살펴본 해외의 입법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호주,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불법정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의 확산성과 재생산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의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앞서 다목에서 강조하였듯, 아동·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모니터링과 개입 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법령상 부과될 필요를 포함한다.

2) 현행법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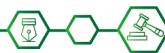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기본적으로 매체물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관련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유해성을 판단하여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나 포장을 하거나,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제3자의 확인이나 개입이 어렵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된 정보를 규제하고 있어, 그 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부재한 문제가 있다.

3) 개정안

전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과 확인 요청이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의 권한이며, 이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의심되나 그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발견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안 제42조 제2항).

〈표 22〉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생략)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현행 제42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
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
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
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
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
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정
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
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 아동·청소년
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

-----.

마.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책무 강화

1) 관련 문제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3. 말경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위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음
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줄었거나 적절히 규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위 제도가 유
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⁰²⁾ 일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
매체 점검단이 2021. 6. 29.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위 점검단이 2주간 점검한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유튜브 등)의 콘텐츠 총 53,114건

102) 이러한 현상에는 현행 규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극적인 법집행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국내 유료 이용자 153만 명을 보유
한 넷플릭스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산정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자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2019.초경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고, ②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크게 논란이 일자 2024. 9. 12.에서야 텔레그램에 청
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중 20,378건(약 40%)이 청소년유해정보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인용 영상물과 성매매 콘텐츠는 20,378건 중 9,211건으로 약 45%를 차지하였다.¹⁰³⁾¹⁰⁴⁾

나아가 최근에는 일부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이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를 낳은 바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SNS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타법 소관부처의 법집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보호 업무 내용도 함께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 현행법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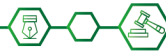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현행법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현행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충실한 보호 수행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역할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

후술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의무 규정에 대응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보충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결과는 매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매개하는 역할일 때에도 이용자의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 아동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03) 여성가족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 (2021).

104)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0.0%로 2018년(19.6%)보다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물 접촉 연령이 앞당겨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성인물 이용 플랫폼은 주로 OTT서비스, SNS, 인터넷포털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표 23〉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u>청소년 보호 책임자</u>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u>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u> ③ <u>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42조의3(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 -----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 ② <u>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u>----- ----- 아동·청소년 보호와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계획 수립</u> 2. <u>이용자의 연령 확인 등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접근 차단·관리</u> 3. <u>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그 결과 제출</u> 4. <u>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u>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관련 문제점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거나 필요 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러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규제가 사실상 국가의 강력한 법적제재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외관만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공동체 안전에 대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각종 불법행위의 터전이 된다는 문제도 크다. 그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와 역할은 개인의 자유권·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 된다.¹⁰⁵⁾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계해 왔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은 오늘날 가장 주류화된 방식 중 하나인데, 이러한 인터넷상의 표현을 물리적 환경의 질서 위주의 사고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며,¹⁰⁶⁾ 인터넷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¹⁰⁷⁾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분야에 대한 규제의 수단은 헌법의 틀 내에서 사고하되 다채롭고 새로운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문이다.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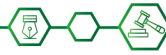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관련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태도는 유지하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호주와 영국, 독일 등 다수의 해외국가도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05)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149-185.

106)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등.

107)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등.

108)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자의 자율적 권한을 인정하되, 그 개입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침해사실을 소명하며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임시조치, 약관 등으로 관련된 절차 고지 등을 할 수 있는 등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의 규정과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의 자율규제는 아동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현행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에 맡기는 느슨한 자율규제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경험적 사례로도 확인된 사실이다.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전윤선 외(2020)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자율규제 실행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¹⁰⁹⁾ 이영주 외(2020)는 동영상 플랫폼이 아동을 유해 상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으며,¹¹⁰⁾ 진승현 외(2020)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¹¹¹⁾ 장운영(2022)도 자율규제의 실질화, 더불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갖추 수 있도록 법제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¹¹²⁾ 윤금낭 외(2023)도 글로벌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하면서 온라인상의 불법·유

109) 전윤선·나종연,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 EU, 영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2020), 1-35.

110) 이영주·유수정,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 정책 변화 이후 동영상 광고의 상품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6권 제3호 (2020), 114-136.

111) 이영희·이재진·진승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 방안, 한국언론법학회 제19권 제2호 (2020), 1-41.

112) 장운영,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2021), 3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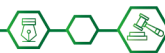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해정보 유통방지 체계에 관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³⁾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율규제의 방식은 유지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의 강화, 가이드 제시와 정부의 협력적 역할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3) 개정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가이드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와 권리 증진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업무 수행의 준거로 삼는 행동강령을 마련하되, 여기에 아동·청소년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예를 들어, 이의제기나 신고 절차, 접근 가능한 상담창구의 마련 등)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안 제43조의2 제1항). 또한, 이러한 행동강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동강령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안 제43조의2 제3항). OSA 2021을 참고할 때, 모니터링과 권고의 총괄 책임을 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동강령”의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 행동강령을 마련하되, 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아동권리의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는 결과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추가로, 현행법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확장된 개념의 아동·청소년유해정보(제41조제1항)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안 제43조의2 제2항).

113) 노창희·윤금남·천혜선·한승엽,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2023), 3-55.



〈표 24〉 정보통신망법 제43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u>청소년유해정보</u> 2.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3조의2(자율규제) ① ----- ----- ----- ----- ----- <u>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u>----- -. <u>행동강령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행동강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 ----- ----- ----- 1. <u>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u> 2. (현행과 같음) ③ <u>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행동강령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게 행동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사.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보호

1) 관련 문제점

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격권 보호론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

로 점차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신종 미디어·플랫폼,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재화적 가치 환산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속속들이 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 개인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맞닿아 있다.¹¹⁴⁾

인격은 강학상 관념이 아니라 실무적, 현실적인 쟁점이다.¹¹⁵⁾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양산된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관하여 관련 법제의 보호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격권을 실정법상 보호법익으로 명문화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1. 28.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전문위원회는, 타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신체적인’ 방식 또는 개인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등을 상대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인격권 관점으로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¹⁶⁾¹¹⁷⁾ 하급심 법원에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배포 범죄의 본질을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하며 엄벌한 바 있다.¹¹⁸⁾

114) 인격권에는 명예와 사생활은 물론이고 생명, 신체, 건강 및 신체적·성적 자유, 인격상의 보호, 초상권, 음성권, 자기결정권(인격의 자유로운 전개) 등이 있다. (출처 : 이동진,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시론, 한국법제연구원 제24-1호 (2024), 10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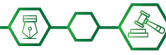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115) 인격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인격권의 개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익히 확인된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후1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등 ; 헌재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등).

116)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헌안, (2022).

117)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하였다.

- ▶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행위 태양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규정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
- ▶ 기술 발달에 따라 성적 대상화 방식이 비정형화·광범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성적 언동’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캐릭터, ID 등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물건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118) “딥페이크 활용한 ‘인격권 침해, 중대 범죄... 법원, 중학생 법정 구속’, 디지털데일리 (2023. 3. 20.).



요컨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법정적인 제도 보장을 통한 망이용자의 실체적 권리 실현이며, 이에 사업자에게 법률상 작위 의무가 발생하는 권리의 범위를 인격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후구제의 중요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확산과 전파는 여느 미디어에 비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다.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디지털 정보는 더욱 손쉽게 복사, 저장,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딥웹(deep web)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사이버범죄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크립토 마켓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상기해보자).

결국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확산을 정부의 심의 규제에 더하여, 정보 중개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 분쟁조정 절차의 의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격권 침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경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간접적 가해자 양산의 2차 가해 문제도 큰 반면, 형법상 개입이 가능한 경우 외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상당한 한계(사이버 공간의 예견 불가능성, 객관적 입증의 어려움, 절차 지연 등)가 있던 점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도입 배경이었다. 대안적 분쟁해결(분쟁조정기구)의 도입은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개진 보장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화해 가능성을 지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도모한 입법이었다.¹¹⁹⁾

그러나 지금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문제에 한하는 분쟁조정이 이 기구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2006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개정되기 이전에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정보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던 점도 인터넷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119) 전현욱, 인터넷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3), 23-30.

2) 현행법의 한계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실시하면서 위 규정 중 “등 타인의 권리”라는 문언에 집착하여 이를 제한 없이 ‘타인의 모든 권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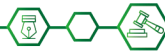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이처럼 해당 규정의 의미가 사생활, 명예훼손, 그에 준하는 권리로 제한되다보니, 아동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 인하여 받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법률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존 판례 법리 내지는 조리에 기하여 권리구제를 다투게 될 소지가 높아졌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인격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 법률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필요성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결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별 법령에서 보호법익과 권리의 구체화,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기준, 손해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아동 포함)의 실체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에 인격권을 명시하고 인격권을 법률 수준에서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삭제·차단 기한 구체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



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지 참고할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어서 지연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OSA 2021 및 KOSA의 경우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제 44조의2 제2항을 개선하는 논의도 요청된다.

라) 대안적 분쟁조정 절차의 활용 필요성

정보통신망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초상권, 성명권, 음성 및 대화, 저작물과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낳을 수 있다. 그만큼 법적 제재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사법 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은 실효성, 자율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여타 개인 간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은 온라인의 자율적 환경 개선에도 도모할 수 있다. 즉, 인격권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요청하는 개정안과 더불어, 분쟁조정부의 권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해야 하는 권리를 ‘인격권’으로 명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2006. 3. 24. 신설되었다. 당초 구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금지하고 있었다.¹²⁰⁾ 이처럼 구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법문은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 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보

120) 구 정보통신망법(법률 제8791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법익을 구체화하고자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¹²¹⁾ 그 후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었지만 제44조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부분은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앞서 제1), 2)항에 서술한 맥락에서 제44조에는 인격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삭제 요청의 성격을 분명히 하되, 구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행과 같이 구체화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자의 면책 사유를 추가하였다.

또한 문언 수정 과정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인격권 보장에 관한 조문(제5조)¹²²⁾을 참고하였다. 오늘날 온라인플랫폼(때로는 1인 미디어도 포함)이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 훨씬 강력한 파급효과와 여론 형성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판시한 내용은 오늘날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¹²³⁾

12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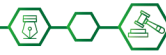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122)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3) 플랫폼 기업이 노출하는 정보의 공정성, 객관성은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유럽연합과 각 유럽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확산 규제를 도모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플랫폼의 정보 제시 방식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건전한 의사 형성을 저해하고 확증편향을 심화할 소지, 테러리즘 등 조장, 여론 왜곡 효과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표 2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전 및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한 기본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기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하여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적, 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명예, 사생활 비밀과 같은 개인의 소중한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막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이 분명한 이상, 언론기관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7).

나) 침해 행위에 ‘전송’을 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이 신설된 2007년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태동하기 이전이자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 양상이 현재와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에는 동법 제2조에 정의된 ‘게시판’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따른 피해 구제가 방점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메신저 서비스 등을 매개로 사인 간 ‘전송’을 통하여 정보가 비가시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규율이 필요한 현안이다. 특히 성범죄, 금융사기, 마약 유통 등의 범행 내지 그에 준하는 유해정보의 유통이 일대일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 영국, 미국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인 간 정보 “전송(deliver)”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¹²⁴⁾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전송’을 추가하였다.

124) 호주 OSA 2021 제6조 제2항, 영국 OSA 2023 제3조 제1항 및 제236조, 미국 KOSA 제2조 등 참조

다)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처리기한 구체화

종전 규정의 ‘지체 없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으로 수정하였는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처리기한에 차등을 둔 조문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호주의 OSA 2021은 사업자가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사업자 및 규제당국이 어떤 정보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에 미국의 KOSA¹²⁵⁾와 유사하게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처리기한을 차등화하는 안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신설할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예시해 본다.

〈표 2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삭제요청 처리기한에 대한 신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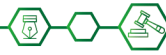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시행령 신설 규정(안)
제00조(삭제등 요청에 대한 처리기한) 법 제44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 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법 제44조의2 제1항의 삭제등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미만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부 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법 제44조의2 제1항의 삭제등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 국가의 신고 및 삭제 지원

그 밖에 인격권 침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아동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를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은 호주의 OSA 2021의 규정을 참고하였다.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및 삭제 지원 관련 규정의 상세 내용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으므로 본 항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125) KOSA의 참고 조문



마) 분쟁조정 절차의 확장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나, 앞서 마목에서 다루었던 정보통신망에 전송 또는 유통되는 인격권 침해 금지를 명시한 것에 맞춰, 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인격권 침해정보의 문제를 다루는 분쟁조정부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4조의5, 안 제44조의5 제1항).¹²⁶⁾

또한,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때에는 정보주체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분명히 하였다(안 제44조의6 제2항).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여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표 27〉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전송·유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명시적, 능동적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침해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6) 다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쟁조정부(제44조의5)가 개정안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센터와 권한 및 역할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조금 더 세분화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삭제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미이행 신고로 구성되는 준사법적 절차와 구분하여, 비사법적 절차로서 분쟁조정기구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

② -----

----- 전송 또는 유통되지 -----
-----.

③ ----- 전송 또는 유통되는 -----
----- 인격권 침해-----

----- 권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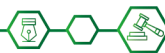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전송 또는 유통된 정보(제4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다)로 타인의 인격권이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삭제등 요청을 쉽게 접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적절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

⑤ -----

----- 24시간 이
내에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삭제 등에 필
요한 -----
-----.

⑧ -----
----- 전송 또는
유통되는 -----
-----.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4(인격권 침해의 신고) ① 이용자(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제2항의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제44조의2제1항의 삭제등을 요청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조 제4항의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상담
2. 신고된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④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이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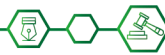
제44조의5(분쟁조정부) ① -----

----- 인격권을 -----

----- 구성된

② 분쟁조정부-----

③ 분쟁조정부-----



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 통하여 전송 또는 ----- 타인의 인격권을 -----

- ④ 분쟁조정부-----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전송 또는 유통-----

- ② 분쟁조정부-----

----- 이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의무 강화

1) 관련 문제점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 사업, 학습, 생활 자원 내지 정보의 획득 등에 있어 핵심적 매개체가 되었다. 또 한편 온라인플랫폼은 광고의 판매 및 타겟팅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모델로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비즈니스로 평가된다.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다음 이 알고리즘으로 이용시간, 빈도, 활동의 극대화를 꾀하는 형태로서, 이용시간과 빈도 등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광고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고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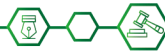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즉,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 음란물, 이용자가 관심을 보인 콘텐츠의 반복적 추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의 제공 등 이용자의 참여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하고 이로써 이용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수집과 타겟팅 광고 노출의 확대를 꾀한다. 영국 국회가 2019. 4.경 양원 합동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수입 중 99%가 광고에서 발생하였고 알파벳과 트위터의 경우 각각 92%와 88%가 광고에서 발생하였다.¹²⁷⁾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 설계하에서 이용자가 노출되는 콘텐츠의 품질,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서비스의 주요 성과 지표(KPI)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틱톡의 알고리즘을 조사한 결과, 틱톡을 사용한 지 불과 40분 이내에 우울증과 불안 관련 동영상에 관심을 보인 이용자에게 추천된 동영상의 무려 93%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¹²⁸⁾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은 중립적인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니라 **광고로 이익을 얻는 영리 사업의 장(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영업의 결과로 초래되는 위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7) "Report-Draft Online Safety Bill" House of Lords and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Online Safety Bill, (2021), 16-17.

128) "Inside TikTok's highly secretive algorithm", Wall Street Journal (2021. 7. 21.).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문제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나 능력은 사실상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부의 행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온라인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구조적 모델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하기도 하였다.¹²⁹⁾

2) 현행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은 2007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에 관한 선언적 규정(제44조의4)을 둔 이래 지금까지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주의의무 또는 작위의무에 대한 책무는 달리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 보호 노력(제44조의8),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의무(제44조의9)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해외의 입법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수단을 제공할 의무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

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의무

정보통신망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둔 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위 규정의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 및 ‘노력’ 등의 요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찾아볼 수 없다.

129) 이와 같은 동향을 반영한 문헌으로, House of Lords and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Online Safety Bill, Report-Draft Online Safety Bill, (2021), 136-140. ; eSafety Commissioner, Safety by Design Overview, (2019), 1-5. ; 김지현,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2021), 1-14. ; 김지현,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2021-21호 통권 제170호 (2022), 1-8. ; 최서지,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국회도서관 2023-20호 통권 제232호 (2023), 1-6. 참조.

이에 여성가족부의 랜덤채팅앱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고시¹³⁰⁾에 따른 세부기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¹³¹⁾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실명 확인 등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아동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확보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의무 도입

미국 KOSA 및 영국 OSA 2023의 유사 규정을 참고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아동 이용자가 스스로 위험하거나 유해한 기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게 하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는 그와 같은 선택권의 부여와 행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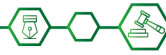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부연하자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우선적으로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관 등 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동

130) 여성가족부는 2020. 9. 10.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고시는 세부 지정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랜덤채팅앱이라는 지극히 일부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 등 다른 유형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목적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예 : 디씨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벌어진 아동 성착취 문제).

131)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호의무를 규정한 본조가 적용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약관 등 계약에 의하여 수정될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입법취지나 법률상 문언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의무 자체가 전적으로 배제될 수도 없다.

〈표 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 제44조의9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① ----- 문자·음성 등----- -----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
〈신 설〉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신 설〉	2.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신 설〉	3.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설정
〈신 설〉	4.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신 설〉	5. 대화 상대방에 대한 신고 및 신고기록 확인 기능의 제공
〈신 설〉	6. 그 밖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의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9(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제한, 거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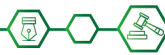
1.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 기능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접근 기능
3. 미디어의 자동적 재생 기능,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보상 기능 등과 같이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
 - 가.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전산상 논리, 규칙 등을 통하여 선별, 제안, 차등화하여 추천하는 기능
 - 나.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마케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능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는 수단
2.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수단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보호 수단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아동·청소년



- 년 이용자의 설정 수준 등을 확인할 권한
- 2. 14세 미만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계정 설정을 변경 및 관리할 권한
- 3.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재화 및 금융거래를 제한할 권한
- 4.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열람할 권한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제2항에 따른 보호 수단 제공, 제3항의 권한 부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1) 관련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금지되는 불법정보는 국가와 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처리와 차이가 있다. 인격권 침해의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와 사인간 분쟁조정 절차, 이를 보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행명령 등으로 규제되지만,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정요구, 제재처분과 같은 공권력 행사방식으로 통제된다.

이러한 불법정보는 공공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유통시 형사처벌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불법정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음란물, 마약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형법 법령상 금지되는 정보 및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이용자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하에서 제시하였듯,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규제 범위 밖이나 그 해악은 중대한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수의 입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행법의 불법정보는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허위조작정보나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정보(‘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들은 현행법 제44조의7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다.¹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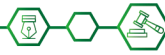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타인사칭 불법정보도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의 2차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한계도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매개하여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도 크다는 점에서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¹³³⁾

특히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주요 사항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가짜뉴스의 형태와 전파 방식을 진화시켰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통합을 훼손시킨다. 허위조작정보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된다. UN에서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시민사회 및 인권 활동가, 소수자 및 소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증오적, 여성 혐오적, 차별적 서사, 인신공격 및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거나 용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것,¹³⁴⁾ 의사와 표현의 자유 맥락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생성 및 유포를 자제하고,

13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94, (2024. 7. 19.)

133)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94, (2024. 6. 11.)

134) A/HRC/56/50(AUV).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은 국제인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¹³⁵⁾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EU는 2023년부터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DSA를 시행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2018년부터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면서,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제고하였다.¹³⁶⁾ 또한, 호주는 2023년 통신 법률 개정안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및 허위정보(misinformation) 방지’ 초안에서 허위정보를 거짓이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기만적인 정보의 온라인 콘텐츠로서, 기만하려는 의도 없이 공유되더라도 심각한 피해(serious harm)를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설명하였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과 온라인 안전국 등을 통해 법 규제 체계와 행정기관을 운영하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밖에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디지털 산업그룹 등을 통해 민간과 산업계, 정부가 합동으로 가짜뉴스 조치안을 운영하는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¹³⁷⁾

3) 개정안

최근의 범죄동향, 국제사회의 입법동향에 발맞추어 타인사칭 불법정보(안 제44조의10 제1항 제2호의2), 허위조작정보(안 제44조의10 제1항 제6호의4)를 불법정보

135) A/HRC/RES/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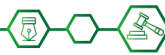
136)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52, (2024. 6. 12.)

137) 김용희 외,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방통융합정책연구 (2023).

에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유통되는 정보 모두를 금지대상에 명시하여 특히 아동 성착취물 규제를 위한 적극적 법 해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안 제44조의 10 제1항 본문).

〈표 2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개정안

현행	개정안
<u>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u>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신설〉 3. ~ 6의3. (생략) 〈신설〉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u>제44조의10(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등)</u> ① -- ----- ----- 전송 또는 유통하여서---. 1. 2. (현행과 같음) 2의2.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3.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 전조 각호----- ----- ----- ----- ----- ----- ----- ----- 제2호의2-----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평가 의무

1) 관련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설계의 제재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역기능 감소에 주목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수익 모델과 콘텐츠 유통 방식 등에 대한 윤곽이 이미 공개된 자료와 증거들으로써 확인되었더라도 그 개별적·구체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공통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객관적인 위험평가 및 투명성 공시으로써 위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우리나라도 콘텐츠 내용을 탐지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유통되는 방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및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투명성 보고 제도만으로는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3) 개정안

디지털 환경에 관한 법·제도에 아동의 권리가 검토되도록 하는 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¹³⁸⁾ 국가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차별화되고 중대한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¹³⁹⁾ 이에 영국의 OSA 2023과 미국의 KOSA의 유사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¹⁴⁰⁾를 참고하여 아동에 대한

138) CRC/C/GC/25, para. 23.

139) CRC/C/GC/25, para. 38.

140)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위험평가 의무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험평가 대상에 불법정보와 아동·청소년유해정보¹⁴¹⁾를 포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 보호에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험평가 결과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단위의 아동·청소년 보호의 일관성 확보와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표 3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12(위험평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⑦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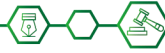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41) 아동·청소년유해정보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전송 또는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 수
2.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3.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연령대별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
4.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계획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때(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험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위험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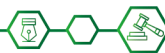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주기·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 가상정보의 표시의무

1) 관련 문제점

인공지능이 산업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추세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이 발달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는 인공지능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불확실성이 크고,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허위정보 등 오류가 생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련하여,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 규제방안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커지면서, 2020년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이 신설되기도 하였다(제4조 제2항 제7호의2). 다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 및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재한 현행 법체계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언급된 인공지능이 무엇을 말하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불명확하고, 따라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우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제한이 있다.

3)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2항 제7조의2에 제시된 인공지능(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고, 해당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는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의 경로와 이용 가능성을 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안 제44조의13). 관련 개념은 근래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을 참고한 것이다.¹⁴²⁾

〈표 31〉 정보통신망법 제4조 개정안, 제44조의13 신설안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u>청소년</u> 보호	7. ----- <u>아동·청소년</u> ----- -----

142)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352, (2024. 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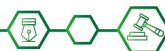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7의2. ----- ----- 인공지능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44조의13(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투명성 보고서의 실효성 확보

1) 관련 문제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2020. 6. 9.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된 “투명성 보고서”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불법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책무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보호와 증진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로 충분하지 않다. 불법정보는 그 자체로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무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앞서 전개한 논



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환경의 팽창은 불법정보를 넘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정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공적 책무의 필요를 높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체계에서 투명성 보고서가 실효성 있게 쓰이려면, 아동·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역할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앞서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 유해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며(법 개정안 제41조 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23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유해정보인지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법 개정안 제42조 제2항),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자가 아동·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예방적 조치, 위험평가와 그 결과 제출과 공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법 개정안 제42조의3 제3항 및 제4항) 하였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를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체계에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공개적 보고 사항에 불법정보만을 다루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3) 개정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것을 명시하며 의무 이행의 정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며, 불법정보와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위험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안 제64조의5).

〈표 32〉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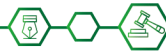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u>일반적인 노력</u> 에 관한 사항	1. ----- ----- 합리적인 조치-----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제44조의12에 따른 위험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파.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망법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불이행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하고 있다. 아동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① 현행 과태료 제재 상향, ② 형벌처벌 대상 확대, ③ 과징금 제도 도입, ④ 불법적 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위반행위별 제재를 예시하면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제재안

구분	주요 내용	벌칙 등
국내대리인 제도	국내대리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지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내대리인 미지정 ¹⁴³⁾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광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전송 ¹⁴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익 몰수·추징
청소년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 ¹⁴⁵⁾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 보호 책임자 수행 업무 미공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격권 침해 정보	삭제 요청 접수·처리 창구 미운영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삭제·임시조치 불이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삭제 불이행	
아동보호의무	대화형서비스 관련 보호조치 불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술적 조치 불이행·보호수단 미제공·법정대리인 권한 미부여	글로벌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
		고위 경영진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평가	위험평가 불이행 또는 실시결과 미제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¹⁴⁶⁾
	허위 결과 제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투명성 보고서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¹⁴⁷⁾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내용 제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4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제3항제1호의3)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제76조제2항제4호의3)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 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취지 및 기대 효과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 수준의 차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4)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145) 정보통신망법(제76조제3항제3호)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보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취지, 그리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미지정 행위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 미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성이 높다.

146)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6호

147) 정보통신망법(제76조제3항제25호)은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행위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투명성 보고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1) 관련 문제점

앞서 서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의 93%인 47,253천명이 인터넷 이용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만 3~9세의 92%, 10대의 99.4%가 인터넷 이용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17년 만 3~9세의 인터넷 이용 비율이 83.9%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특히 5년 동안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⁸⁾ 실제로 동영상 앱인 틱톡은 국내에서 2020년 7월 미성년자 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해외 유출을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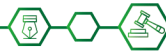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호주, 영국, 미국의 법률안 모두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국내법의 경우 온라인 안전에 관하여 어느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일률적인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접근성 상승과 더불어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국제기준상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GDPR에서는 ‘아동’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은 13세 미만, 청소년은 20세 미만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당시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

148) 장유정·나종연,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제54권 제2호(2023), 3.



정을 처음 도입하였으나, 개정이유에 어떠한 기준으로 아동의 정의를 '14세 미만'으로 선정하였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는 해외 입법례 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복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보다도 낮으므로, 연령을 18세로 상향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선언적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대상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제5조 개정).

〈표 34〉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8세 미만 아동의 ----- ----- 18세 미만 아동의 -----. ④·⑤ (현행과 같음)

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요건 강화

1) 관련 문제점

2023. 1.경 다크웹에 쿠팡 다크웹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데이터가 게시됐다. 해당 데이터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쿠팡 측은 '쿠팡 누리집과 네트워크 상에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쿠팡 내 판매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오픈마켓 정책상 고객이 가입할 시 동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라 판매자에게 고객의 정보가 제공되어, 원

칙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는 해당 판매자에게 있다¹⁴⁹⁾.

이처럼 e커머스의 경우 판매자와 배송위탁업체 간 정보가 오가는 과정에서 부실한 보안관리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험이 매우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더욱 강화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쇼핑물,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확연히 높아지면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2) 현행법의 한계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기밀성,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제3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312.3), GDPR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¹⁵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대리인의 신원 및 상세 연락처, 개인정보의 예정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¹⁵¹⁾. 우리 법과 달리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처리(processing)’으로 보아 동일한 규율 체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제 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뿐 등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 법제와 유사하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제3자에게만 제공하도록 규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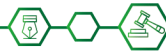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제18조), 민감정보, 고유식별 등을 처리할 시에도 안전성

149) “이커머스 플랫폼의 제3자 개인정보 유출 책임 어디까지?”, 디지털투데이 (2023. 3. 30.). ;

“[단독] 해킹된 쿠팡 개인정보 46만건…X동 0호, 파티용품 50개”, 한겨레 (2023. 3. 20.).

150) GDPR 14.

151) GDPR article 6. 1. (a)



확보에 필요한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에 있어서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고 있듯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현행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7조 제5항).

〈표 35〉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④ (생략) 〈신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구체화

1) 관련 문제점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아동 이용 앱 서비스들 가운데 앱 다운로드 후 별도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로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전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어플도 존재한다¹⁵²⁾.

이와 같이 현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의 경우 많은 내용을 효과적이

152) 나종연 외6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159-161.

지 않은 방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비로그인 방식의 이용 또는 소셜로그인 방식 등 이용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서비스마다 다른 정보제공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¹⁵³⁾¹⁵⁴⁾

2) 현행법의 한계

COPPA의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하여 ①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에 법정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운영자는 제3자에 대한 아동 개인정보 공개가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매우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면제 사유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에게 열람요구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¹⁵⁵⁾ KOSA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은 플랫폼을 처음 사용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13세 이상 1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자녀 보호 도구 활성화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연령별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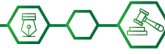
반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14세 이상 연령대의 아동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처리에 대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법정대리인의 원만한 동의 획득을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성명

153) 나종연 외6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186.

154) 2020. 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정보통신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로 신설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55) 나종연 외6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33-35.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아동에게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예방 목적의 서비스나 상담 등에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수집의 목적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이 두터워지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¹⁵⁶⁾.

3) 개정안

가) 국가의 신고 및 삭제 지원

14세 이상 연령대의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지만, 이들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안 제22조의2 제2항),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공개 위험성과 권리구제 접근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안 제22조의2 제4항)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나) 법정대리인 동의 방안 개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주체의 아동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안 제22조의2 제3항). 대통령령에는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상담 또는 보호서비스(GDPR), 교육기술 분야(COPPA)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서비스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례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동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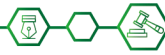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사용 개선

현행 조문에 ‘침해 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여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안 제22조의2 제4항).

156) GDPR recital 38. 참조

〈표 36〉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신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 개인정보, 18세 미만 아동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 다만,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인 아동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탁자 2.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및 내용 3. 수탁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수탁자의 업무 수행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재산적·법률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④ ----- 사항을 고지하거나 침해사실 등을 통지할 -----. ⑤ (현행제4항과 같음)



라. 아동의 열람 등 요구 권리 보장

1) 관련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이며, 특히 ‘잊힐 권리’의 보장은 범세계적인 추세로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 개정 등으로 보완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양육과정을 SNS에 게시하며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사례(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칭함)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셰어런팅은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발생한다. 실제로 국내 아동·청소년(10세~18세) 1천 명 중 85.5%는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⁷⁾

2) 현행법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아동의 개인정보가 아동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 4.부터 ‘디지털 잊힐 권리’(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18세 미만일 때 작성했던 인터넷 게시물 중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로서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한정되어 지원되어, 부모나 제3자가 올린 삭제는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세대특성을 반영한 ‘아

157) “아동 10명 중 9명 ‘내 동의없는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오마이뉴스 (2024. 2. 7.).

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원칙 확립, 잊힐 권리 제도화, 획일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⁵⁸⁾

3)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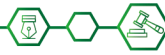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아동은 정보접근과 의사표현의 역량, 권리구제 메커니즘의 접근가능성 등에 있어 성인보다 불이익한 위치에 있을 우려가 높은 만큼, 국가는 아동이 직접,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CRC/C/GC/24, para. 72). 절차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개인 정보처리자의 책무에 해당한다. 이에 18세 미만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8조상 열람등요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 마련 규정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안 제38조 제6항 신설).

대통령령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요구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할 것, 정확하고 신속하게 요구에 응할 것,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생략) 〈신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위원회는 18세 미만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8) “어린이 청소년 남긴 인터넷 기록 ‘삭제’ 정부가 돕는다”, 미디어오늘 (2019. 12. 29.).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1) 관련 문제점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8시간이었다.¹⁵⁹⁾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상업적인 시도와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위치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및 「민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는 최소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수의 해외법규 및 국제기준도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을 현행 14세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행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아동의 위치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기준에 따를 때 만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치정보주체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아동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치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 기준은 국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 기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59)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

아동의 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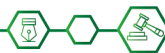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2022년 7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는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상 보호 대상인 만 14세 미만 아동 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까지 고려하여 아동의 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 개정안

현행 위치정보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발달 정도에 따라 보호의 형태나 방식은 다를 수 있더라도 최소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였다(제3조 제2호 개정).

〈표 38〉 위치정보 보호법 제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	2. ----- ----- ----- ----- 18세 --



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나. 아동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과 처리 고지의 의무

1) 관련 문제점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consent)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양식과 전문용어로 이용약관 및 정보 처리 고지를 할 경우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위치 정보 및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가 될 경우 아동의 정보는 정보주체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동의에 기대여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3항), 위치정보법에는 이와 같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고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연령을 고려한 이용약관이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위치정보 처리 고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인 정보주체가 이용약관 또는 위치정보 처리 고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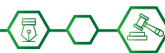
3) 개정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공개를 할 때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안 제12조 제3항 신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 친화적인 고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안 제17조의2 제2항 신설).

〈표 39〉 위치정보 보호법 제12조 개정안, 제17조의2 신설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② (생략)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만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제1항의 이용약관의 공개 등을 할 때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생략)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 정보 주체인 아동의 지위 확인 및 의사 존중을 위한 절차 마련

1) 관련 문제점

2023. 6. 23.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 3. 2.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아동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앱 설치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등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발생하는 방식의 앱과 관련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앱 설치에 대해 아동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

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위치정보주체인 아동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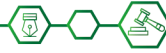
위치정보법 제26조에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제25조에서는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과 비판이 존재한다.

3) 개정안

현행 위치정보법 제25조의 조문 제목은 “법정대리인의 권리”로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의무이행자의 책무이며, 아동과 그 의사가 같다는 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로 변경하였다(안 제25조).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아동의 동의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의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안 제25조 제1항, 안 제43조 제2항 제10호).

더불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다(안 제25조 제3항).



〈표 40〉 위치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 15. (생략) ③ ~ ⑧ (생략)	제25조(아동의 위치정보 보호) ① ----- ----- ----- ----- -----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의 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아동과 법정대리인은 개인위치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개인정보주체인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 ----- ----- ----- 11. ~ 1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V. 결론

V. 결 론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중매체(mass media)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종래의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파매체 등과 대비하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매체)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¹⁶⁰⁾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2. 인터넷의 성격을 위와 같이 천명한 이래 22년이 경과한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전통적 권력에 맞선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으로서 대두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통신서비스 그 자체가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¹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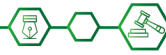
특히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정보를 교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른바 ‘플랫폼 공화국’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으로 처리되거나 플랫폼이 기능을 대체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국경과 국적의 의미는 연령이 낮은 세대로 갈수록 반감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기반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은 자명하고도 비가역적 현상으로 보이며¹⁶²⁾, 플랫폼은 이른바 21세기판 ‘사상의 시장’ 지위도 점하고 있다.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매체로 규정하던 전통적 관

160)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161) 이와 유사한 논조의 문헌으로, Kai Riemer·Sandra Peter, Algorithmic audiencing: Why we need to rethink free speech on social medi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6, Issue 4 (2021) ; Asha Rangappa, The Not-So-Invisible Hand in Twitter's Marketplace of Ideas, The Freedom Academy with Asha Rangappa (2022) [<https://asharangappa.substack.com/p/the-not-so-invisible-hand-in-tweets>] (2024. 10. 1. 확인); Arvind Narayanan, Understanding Social Media Recommendation Algorithms,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2023) ; “How have social media algorithms changed the way we interact?”, BBC (2024. 10. 13.). 참조

162) 구글, 네이버, 카카오가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 미칠 파장을 상상해보자.



점은 국가 對 시장의 구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효과를 발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십 년간 확대된 나머지 이제는 인터넷이 국가를 대체하고 사상과 부의 편향 및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생애와 사생활을 경계 없이 수집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사람들을 현실에서 유리시켜 가상공간에서 자극적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모하도록 유도하고¹⁶³⁾, 전 세계 아동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오늘날 위와 같은 전통적 관점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론에서 나아가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이론적,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민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서 도출되었다. 더 이상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론이나 국가의 삭제·차단 조치만으로는 이 방대한 정보와 위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규제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불법·유해정보 유통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아동들은 디지털을 어떻게 마주하고 경험할 것인가. 플랫폼의 발전은 현재 시대의 당사자이면서, 더 먼 미래를 살아갈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적 개선에 앞서 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공론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후속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6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 9. 19. 메타, 구글, 틱톡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집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의 타겟팅과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훈련에 활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 FTC, A Look Behind the Screens: Examining the Data Practices of Social Media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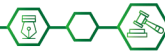
우선, 본 연구에서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게 직접 관련된 3가지 국내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방안을 주로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권한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다. 향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심의제도를 비롯한 통신규제체계 전반이 그 실효성과 시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부분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룬 해외입법례의 관련 내용은 국내의 규제체계를 재설계하는 논의에 참고 가치가 높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이자 정보 주체로서의 아동 보호 방안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것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의 전부는 아니다. 가령 ‘사회적 차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및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아동 보호’ 등 수많은 의제들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예시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검토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소개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 환경이 되는 가정환경을 포함한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 문해력이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식적 역량을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0. 8. 27.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현행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¹⁶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개정된 교육과정이 차례로 시행되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다.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을 뿐이다.

164)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는 2024. 9.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가 제정되어 있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가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규정한 학교법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2013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UNESCO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개념에 기초한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명시하는 새로운 법조항을 마련하여 모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반드시 미디어와 정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였다.¹⁶⁵⁾

본 연구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아동을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교육이 설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아동의 참여와 자유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권리 관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콘텐츠 생산자로서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도 중요하다. 오늘날 아동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이 보편적 소통의 수단이 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그만큼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참여가 상업적 활동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¹⁶⁶⁾ 그에 따른 아동학대나 노동착취,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고, 공론화되어 왔다. 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¹⁶⁷⁾ 2024년 여름경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일부 법 개정이 이뤄졌을 뿐이다.¹⁶⁸⁾

165) 김나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4호 (2021), 1-4.

166) 김은미, 유아 미디어 이용 행태의 진화, KISO 저널 제36권 (2019), 37-39.

167) 일례로 2018년에는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국내 어린이 유튜브가 아빠의 지갑을 훔치게 하는 설정이나 도로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방영한 바 있어 서울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린 사례까지 있었으나, 단발적 이슈에 그쳤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6.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위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수행 중이나, 자율적 권고 수준인데다 아동권리 침해의 다양한 양상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도 않다.

168) 이 대응책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에 초점을 두는 등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고, 아동권리에 적합하지 않은 논의가 활성화되는 실정이다.

미국 및 프랑스는 일찍이 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콘텐츠 생산에 따른 수익을 의무적으로 신탁시킴으로써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콘텐츠의 양과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고, 위반 시 보호자는 물론 광고주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다.¹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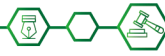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21대 국회에서 미국, 프랑스 입법례와 유사한 내용의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키즈 유튜버 보호법’)¹⁷⁰⁾이 2021. 5. 14.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정부가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밝힌 키즈 유튜버 등 관련 재정보호제도 도입 방침도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아동이 처한 학대·착취, 재산권 침해, 범죄 노출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 아동의 강력히 보호하도록 입법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제인권규범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핀 아동의 온라인 안전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 내 아동권리 보장’의 일부에 해당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청취’의 일반원칙

169)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이 수익 창출의 도구로 착취, 학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이 SNS를 통해 거둔 수입을 부모·보호자로부터 보호하는 개정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이 2024. 7. 1.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부모·보호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유튜브·틱톡 등 수익형 소셜미디어 비디오에 등장시켜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여야 하고 아동은 18세가 되었을 때 위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 12개월 동안 아동 출연 분량이 30% 이상인 콘텐츠가 적용 대상이며, 아동의 출연 분량이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0%에 해당하는 수익을 신탁하여야 한다. 아동이 만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아동은 18세에 도달하였을 때 부모·보호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0. 10.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는 콘텐츠의 양과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영상제작허가를 받고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허가 과정에서 부모 등에게 아동의 권리, 재정적 의무, 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하여 고지한다. 또한 위 법에서도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익을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75,000유로 및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광고주도 함께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70)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966, (2021. 5. 7.).



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제25호에서 일반원칙 못지 않게 강조한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evolving capacity)’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인권 담론의 중추이자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총론에 더하여 일반논평 제25호가 망라하고 있는 광범위한 세부 내용들이 국내의 법제에 균형감 있게 적용되도록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별과 연령, 빈곤, 장애, 국적, 지역, 자유박탈 상황 등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정보통신 접근과 참여의 균등한 보장, 아동 혐오·배제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비차별 개선, 그 밖에 아동의 생명·생존·발달권에 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제의 개선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발달 특성에 적합한 섬세한 설계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과 연결된 삶의 저변이며, 아동이 접하는 온라인 세상은 어른들이 경험하는 세계와 다를 수 없다. 게다가 아동은 어른들이 주도하는 생성물에서 더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으며, 영향받은 것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즉, 아동의 온라인상의 피해는 온 사회가 떠안을 비가역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이며, 디지털을 매개한 아동의 범죄도 결코 아동(만)의 범죄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이 관계성을 자각하여야 비로소 성인과 사회, 기업과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며, 아동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건대, 본 연구에서 다룬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 및 이를 위한 사전규제론은 지극히 부분적인 각론이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이라는 화두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공론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논문

- 김나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 입법정보 2021-24호 통권 제173호 (2021).
- 김상원·최경미,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법적 연구-EU·호주·영국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3권 제1호 (2024).
- 김여라, 호주 [온라인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1)]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중재 Wn.163 (2022).
- 김용희 외7인,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방통융합정책연구 (2023).
-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 김은미, 유아 미디어 이용 행태의 진화, KISO 저널 제36권 (2019).
- 김지현, 빅테크 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1호 통권 제170호 (2021).
- 김지현,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24호 통권 제205호 (2022).
- 김지현·안성경·조경희·최서지,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6호 통권 제238호 (2023).
- 김현경·이경준, EU의 ‘GDPR 적정성결정을 위한 입법 과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1권 제3호 (2019).
- 김효권·박노형·정명현, EU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나종연 외6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 나종연·전윤선,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 EU, 영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2020).
- 나종연·장유정,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제54권 제2호 (2023).
- 노창희·윤금남·천혜선·한승엽,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2023).

유수정·이영주,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 정책 변화 이후 동영상 광고의 상품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6권 제3호 (2020).

이동진,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시론, 한국법제연구원 제24-1호 (2024).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3).

이영희·이재진·진승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 방안, 한국언론법학회 제19권 제2호 (2020).

장윤영,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2021).

정경오·최경진·황창근,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증진 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채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최서지,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20호 통권 제232호 (2023).

Arvind Narayanan, Understanding Social Media Recommendation Algorithms,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2023).

Kai Riemer·Sandra Peter, Algorithmic audiencing: Why we need to rethink free speech on social medi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ume 36, Issue 4 (2021).

2. 판례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후1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lfi AS v Estonia App. no. 64569/09 ECHR, 16 June 2015, [110]

3. 해외 법령¹⁷¹⁾

[호주] Online Safety Act 2021

[영국] Online Safety Act 2023

[미국] Kids Online Safety Act

[유럽연합]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

4. 기타 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2024).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2006).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202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2010).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2022).

여성가족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 (2021).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2).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02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2024).

전현욱, 인터넷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대별 SNS 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 (2024).

최경진, EU GDPR 분석 및 시사점, NAVER Privacy White Paper

통계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주요 결과 발표 (2022).

171) 발의안도 포함하였다.

Asha Rangappa, The Not-So-Invisible Hand in Twitter's Marketplace of Ideas, The Freedom Academy with Asha Rangappa (2022).

Baker McKenzie, Australia : Review of the Online Safety Act and related reforms on online harms (2024).

Child Rights Connect. (n/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 Dialogue Structure (2024).

DITRDCA, Issue Paper : Statutory Review of the Online Safety Act 2021 (2024).

eSafety Commissioner, Safety by Design Overview (2019).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Final order, In re Cambridge Analytica, LLC, Comm’n File No. 1823107, Dec. 6, 201 (2019).

Federal Trade Commission, A Look Behind the Screens : Examining the Data Practices of Social Media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2024).

House of Lords and House of Commons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Online Safety Bill, “Report – Draft Online Safety Bill” (2021).

OFCOM, “Ofcom’s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Online Safety Act” (2023).

Save the Children, UNICEF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2012).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A/HRC/17/31) (2011).

UN CRC 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 (2014).

UN CRC, REPORT OF THE 2014 DAY OF GENERAL DISCUSSION “Digital media and children’s rights”(2014).

UN CRC,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3) (2015).

UN CRC, General comment No. 13 (2011)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CRC/C/GC/13) (2011).

UN CRC,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CRC/C/GC/25) (2021).

UN CRC, General comment No. 25 (2021) on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 (2021).

UN HRC,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A/HRC/RES/34/7) (2017).

UN HRC,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A/HRC/39/29) (2018).

UN HRC,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A/HRC/RES/56/7) (2024).

UN HRC, Preserving the gains and pushing back against the global attack on civic space and growing authoritarianism(A/HRC/56/50(AUV)) (2024).

UN HRC, Safety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A/HRC/RES/56/6) (2024).

UNICEF, Child Rights Education Toolkit: Roo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irst edition (201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urgeon General Issues New Advisory About Effects Social Media Use Has on Youth Mental Health (2023).

<https://www.blumenthal.senate.gov/about/issues/kids-online-safety-act>

5. 언론보도

- “10대 소녀 자살에...인스타그램, 가해 관련 사진 퇴출”, 아주경제(2019. 2. 8.)
- “GDPR 시행 1년, 유럽 내 디지털데이터 보호 강화 움직임”, KOTRA해외시장뉴스(2019. 10. 29.)
- “어린이 청소년 남긴 인터넷 기록 ‘삭제’ 정부가 돕는다”, 미디어오늘(2019. 12. 29.)
- “한국 SNS 사용률 세계 3위... 월 이용자 수 ‘네이버 밴드’ 가장 많아”, 세계일보(2020. 9. 9.)
- “[단독] 해킹된 쿠팡 개인정보 46만건...X동 0호, 파티용품 50개”, 한겨레(2023. 3. 20.)
- “딥페이크 활용한 ‘인격권 침해’, 중대 범죄...법원, 중학생 법정 구속”, 디지털데일리(2023. 3. 20.)
- “이커머스 플랫폼의 제3자 개인정보 유출 책임 어디까지?”, 디지털투데이(2023. 3. 30.)
- “英 ‘AI기술 활용해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할 것’”, 데일리굿뉴스(2023. 12. 6.)
- “인스타그램 등 SNS, 美 청소년 대상 연 110억 달러 광고 수입”, 연합뉴스(2023. 12. 28.)
- “아동 10명 중 9명 ‘내 동의없는 개인정보 삭제해 주세요’”, 오마이뉴스(2024. 2. 7.)
- “틱톡, EU 압박에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영구 중단”, 포춘코리아(2024. 8. 6.)
- “‘SNS 가짜 뉴스 선동’ 혼쫓난 영국, 온라인 규제 법 손질 시사” SBS 뉴스(2024. 8. 10.)
- “유튜브에 퍼진 ‘마약류 체험’ 영상...청소년 마약사범 양산 부추길 위험 [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 뉴스(2024. 8. 18.)
- “한국은 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나...‘궁금한이야기Y’, 딥페이크 성범죄 조명”, SBS 뉴스(2024. 9. 6.)
- “Inside TikTok’s highly secretive algorithm”, Wall Street Journal(2021. 7. 21.)
- “Online Safety Bill: New offences and tighter rules”, BBC(2021. 12. 14.)

“Fewer than 1% of parents use social media tools to monitor their children's accounts, tech companies say”, NBC News(2024. 3. 30.)

“Battle lines drawn as US states take on big tech with online child safety bills”, The Guardian(2024. 4. 15.)

“Child Online Safety Bill Scales Senate Hurdle, but Fate Remains Uncertain” The New York Times(2024. 7. 25.)

“What’s ahead for Kosa, an online safety act for minors, as it reaches US House?”, The Guardian(2024. 8. 3.)

“How have social media algorithms changed the way we interact?”, BBC (2024. 10. 13.).

· 부록

부록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u>자</u> 를 말한다. 5. ~ 13.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자를 말하며, “이용자” 중에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u>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생략) <u>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법정보 및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u>
〈신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u>청소년</u>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u>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 및 정보사회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④ ----- ----- ----- <u>아동·청소년</u> -----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6의2. 삭제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8.·9. (생략)

③ (생략)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7. ----- 아동·청소년 -----

7의2. -----
----- 인공지능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 또는 입력에 적응하여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8.·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트래픽 양 -----

-----.

1.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등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44조의5에 따른 행동강령 제출

3.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제출

〈신 설〉

〈신 설〉

3. (생 략)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

5. 제42조의3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그 업무 수행 결과 공개

6.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
-----,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 법인을 둔 경우

2.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음란·폭력정보,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자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

1. (생 략)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생 략)

〈신 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아동·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아동·청소년---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 -----

3. 아동·청소년 -----

4. ----- 아동·청소년 -----

② -----

----- 아동·청소년 -----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아동
·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아동·청소년

--.

제42조의3(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보호 --
-----.

②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
----- 아동·청소년 보호와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2. 이용자의 연령 확인 등 아동·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접근 차단·관리
3.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그 결과 제출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전송·유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명시적, 능동적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침해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 전송 또는 유통되지 -----
-----.

③ ----- 전송 또는 유통되는 -----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인격권 침해-----

----- 권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전송 또는 유통된 정보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한다)로 타인의 인격권의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삭제등 요청을 쉽게 접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적절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④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

-----,

-----.

⑤ -----

----- 24시간 이내에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삭제 등에 필요한 -----
-----.

⑧ -----
----- 전송 또는 유통되는 -----

-----.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4(인격권 침해의 신고) ① 이용

자(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제2항의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제44조의2제1항의 삭제등을 요청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조 제4항의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상담
2. 신고된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④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이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생략)

<신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43조의2(자율규제) ① -----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 행동강령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단체는
행동강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2.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행동강령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

③ (생략)

제44조의5 (생략)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
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
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
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
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
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④ (생략)

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단체에게 행동강령의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4조의7 (현행 제44조의5와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전
송 또는 유통-----

-----.

② 분쟁조정부-----

-----, 이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
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의
견도 들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설〉

3. ~ 6의3. (생략)

〈신설〉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

제44조의10(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등)

① ----- 전송 또는 유통하여서는---.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3.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 전조 각호-----

----- 제2호의2-----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① ----- 문자·음성 등-

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하
여야 -----
-.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설정
4.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5. 대화 상대방에 대한 신고 및 신고기록 확인 기능의 제공
6. 그 밖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 하려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제한, 거부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 기능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접근 기능
3. 미디어의 자동적 재생 기능,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 기능 등과 같이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
 - 가.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전산상 논리, 규칙 등을 통하여 선별, 제안, 차등화하여 추천하는 기능
 - 나.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마케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능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는 수단
 2.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수단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보호 수단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설정 수준 등을 확인할 권한

2. 14세 미만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계정설정을 변경 및 관리할 권한

3.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재화 및 금융거래를 제한할 권한

4.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열람할 권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제2항에 따른 보호 수단 제공, 제3항의 권한 부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 (생략)

〈신설〉

제44조의11 (현행 제44조의9와 같음)

제44조의12(위험평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전송 또는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험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 수
2.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3.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연령대별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
4.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계획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유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험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때(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험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위험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주기·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제44조의13(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분쟁조정부) ① -----

----- 인격권을 -----

----- 구성된 -----

-----.

② 분쟁조정부-----

-----.

③ 분쟁조정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 통하여 전송 또는 ----- 타인의
인격권을 -----

-----.

④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u>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분쟁조정부</u>----- ----- -----.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 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 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 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 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 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u>일반적인 노력</u>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 ----- ----- ----- ----- ----- ----- -----. 1. ----- ----- <u>합리적</u> <u>인 조치</u>----- 2. ~ 5.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의12에 따른 위협평가의 기</u> <u>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부록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18세 미만 아동이 ----- ----- ----- 18세 미만 아동의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④ (생략) 〈신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 개인정보, 18세 미만 아동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 다만,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
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신 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
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생 략)

〈신 설〉

사항을 정보주체인 아동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탁자

2.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및 내용

3. 수탁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수탁자의 업무 수행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재
산적·법률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
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④ -----
----- 사항
고지하거나 침해사실 등을 통지할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위원회는 18세 미만인 정보주
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열람등요구
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
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록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 ----- ----- 18세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② (생략)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만14세 미만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제1항의 이용약관의 공개 등을 할 때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생략)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① (현행 제6조의2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
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
항 또는 제2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 15. (생 략)

③ ~ ⑧ (생 략)

제25조(아동의 위치정보 보호) ①-----

----- 법정대
리인의 동의도 -----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의 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개인위
치정보주체인 아동과 법정대리인은
개인위치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9. (현행과 같음)

10. ----- 개인
정보주체인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

11. ~ 15.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연구보고 2024-4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발행 2024년 10월

발행인 황영기

편집인 김승현

발행처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전화 02-799-0425

홈페이지 <http://www.childfund.or.kr>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